

96년 1차 자료묶음집

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자료모음

인권운동사랑방 [정보자료실]

G1.45

G1.45

96년 1차 자료묶음집

**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자료모음**

인권운동사랑방 [정보자료실]

이 자료집은
인권을 공부하는 젊은 활동가들에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교재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이 자료집에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인권운동사랑방 [정보자료실]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140-150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천리안,하이텔 ID rights

목 차

인권운동론

우리의 인권운동, 어디로 가야하나? - 서준식	1
희망의 인권운동 - 자생과 금욕을 위한 변명 - 서준식	7
인권과 인권운동 - 서준식, 전홍윤과의 인터뷰 - 서준식, 전홍윤	18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 - 박원순	22
문민정권, 1년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과제 - 서준식	26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한국 그리고 나 - 오재식	43

인권운동의 이론적 쟁점

인권운동과 보편적 인권규범 그 7대 딜레마 - 이대훈	69
중국인권문제를 보는 시각 - 동아시아적 상황과 관련하여 - 백영서	76
인권에 관한 아태지역 비정부조직 선언	89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이해

국제화와 인권[현대사회와 인권] - 사회민주주의연구소	10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한 이해 - 류은숙	110

인권의 역사

인권의 역사적 발전상황[현대사회와 인권] - 사회민주주의연구소	122
시대의 변화 변화와 인권(1), (2), (3) - 이대훈	130

자료

세계인권선언	13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40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52

희망의 인권운동 - 자생과 금옥을 위한 변명 -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1995

안정되고 평범한 삶. 나의 힘으로 나의 땀으로 나의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리면서 음악을 듣고 책을 보고 삶을 쓰는 자그마한 삶. 이것이 나의 오랜 꿈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중학교 체육교사, 대학 시절에는 국민학교 교사, 교사의 꿈을 빼앗긴 감옥에서의 20대에는 작은 출판사업, 감옥에서의 30대 후반에는 땀별 아래에서 곡괭이 내려치는 육체노동의 마지막 꿈을 쫓고 있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언제나 이렇게 보잘것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 보잘것 없는 일들이나마 언제나 나에게 비현실적인 꿈일 수 밖에 없었다.

이 보잘것 없는 소망들이 도대체 왜 비현실적인 꿈일 수 밖에 없는가를 나는 뒤늦게도 요즘에야 46살의 무게를 가지고 몸으로 이해한다. 나의 인권운동의 일상 속에서, 나는 우리에게 이런 작은 삶을 허락해주지 않는 무참히 파괴된 세계를 생생히 느끼며, 또한 내가 그 파괴된 세계속에서 소외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지고 있다고 자각하기에 나는 역시 이 작은 세계로 침잠해 갈 수 없음을 느낀다.

빛을 지고 있는 사람은 금옥의 아픔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출옥 7년, 隔絶된 암흑의 감방에서 6월대항쟁의 뜨거운 조극의 심장으로 살아 돌아온 나는, 冷戰守舊勢力과 민중세력과의 힘이 지금도 치열하게 거들하고 있는 정치과잉의 이 땅에서 피팍스러운 금옥의 은둔자 처럼 나의 인권운동을 참조하는 일에만 고집스럽게 몰두해왔다. 정치과잉의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나 역시 정치의 마인드를 키우며 힘차게 정치구호를 외치면서 살아가고 싶다. 인권운동은 본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으며 지금도 분명 그렇다.

그러나 자생에의 정열은 오늘도 나를 인권운동의 땅에 결박해놓고 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도 破片的인 정치주장 즉, 권리. 우리로 하여금 가장 직접적으로 소외의 구조에 대한 깊은 인식에 이르게 해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임을 나는 어느 때부터인가 믿게 되었다. 수많은 권리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서로 부딪히며 얽히며 소용돌이 치는 광대한 권리의 바다에서 때로 餓死 직전의 고통에 허위적거리면서도 나는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을 붙들면서 나의 희망, 즉 사람들을 소외로부터 해방시켜 줄 이념의 구현으로 나아가고 싶다. 나의 희망은 기성품이 아니다. 인권운동은 나의 희망이 자생하기 위한 금옥의 場이다.

자생을 위한 노력은 고통스러운 기쁨이다. 자생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기쁨이지만 그러기 위하여 밭 딪어야 할 場은 굴욕의 고통으로 넘치는 바다임에 틀림없다. 나는 감옥에서의 나의 삶을 사랑했지만 감옥은 중오했다. 나는 자생의 기쁨을 향한 나의 인권운동가로서의 삶을 사랑하지만 분명 인권운동 그 자체는 별로 하고 싶지 않는 일인 것이다.

금옥의 아픔과 자생에의 정열. 이것은 여전히 나의 삶의 양식이다.

* * *

17년의 감옥살이가 나를 키워주고 있는 동안 냉전의 시대는 과거로 과거로 흘러가고 세상은 양

극에서 다극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감옥의 세월도 바뀌고 있었다. 감옥에서 30대 후반에 접어든 나의 삶은 피를 달리는 고녀와 멜랑콜리로 점철되어 있었다. 나는 그 때 拷問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 내가 20대 어린 나이에 쉽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 처럼 단순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강력한 느낌이 30대 후반에 접어든 나의 가슴을 강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엄청난 고통이요, 망망대해에 혼자 내던져진 것파도 같은 절망이었다. 20대 초반에 크나큰 감동으로 학습했고 나의 삶의 기둥이 되어준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나에게 여전히 유효했으며 나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지탱해주는 거대한 희망의 원리였지만 이미 그것은 적어도 나약한 나에게서는 자신의 삶 자체를 일상의 실천속에서 언제나 굳건히 받쳐줄 만능의 처방이 아니게 되어 있었다. 오랜 세월 세상과 인간들로부터 단절된 나에게서는 구체적인 실존을 가진 구체적인 인간에 대한 구체적 사랑의 축적은 없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사실이었다.

산뜻한 抽象과 집단적 정열에 몸을 내어 맡기는 나의 안락한 진보의 계절은 가버리고, 인간현실의 무한한 복잡함은 정직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진보의 편에서 굳건히 서야 할 고난의 계절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그것은 당연히 고난이었다. 다시 처음부터 구체적인 현실에 발을 딛고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며 현실의 파편들을 끌어모아 그것들을 다시 서서히 희망의 체계로 통합해 나가기 위한 지루한 세월을 견디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성으로의 회귀, 이것은 언제나 失意에 빠진 사람과 역사를 건강하게 갱신시켜주는 힘인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자생애의 정열, 따라서 금욕의 아픔 없이는 이루어 낼 수가 없다. 그 무렵부터 나는 차가운 벽에 둘러싸인 독방에서 구체적인 삶의 바다속으로 뛰어들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감옥에서 내가 열망했던 구체적인 일은 결코 인권운동이 아니었다. 근대 시민혁명의 완성과 더불어 지구상에 태어난 인권이라는 개념은 자본주의를 지탱시키기 위하여 계급의 개념을 은폐해온 지극히 서구적인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노동계급은 인권운동을 하지 않는다. 때로 계급주의는 보편적인 인권을 앞세워 노동계급의 근본적으로 정당한 희망을 깔아 뭉개버린다. "구체적인 일에 공을 들이는 노력은 값지지만 그러나 인권운동은 구체적 현실의 바다에서 가치중립적으로 방향없이 허위적거릴 뿐 사회의 질적문제에 육박하지 않으며 초월을 시도하지 않는다. 변혁의 지평을 바라보지 않는다. 인권운동은 아무래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알갭게도 지금 나는 상상도 못했던 그 인권운동을 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멜랑콜리를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그리고 평생 인권운동가로서 살아갈 결심을 하고 있다.

* * *

거듭 말하거니와 나는 자신이 인권운동을 하게 되리라고는 스스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남한에서도 비전향 간첩이라는 낙인이 찍힌 오랜 감옥살이 끝에 풀려났던 나는, 그런 나를 둘러싼 여러가지로 제약된 조건속에서는 자립을 하기 위한 정열을 가지고 옹드려 박해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단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자그마한 삶을 살면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이 가슴에 쌓인 것들을 원고지에 쏟아내고 싶은 소망은 간절했지만 비전향 간첩이 인권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인권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 또한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두 접시에 올려 놓은 나의 관심은 언제나 아쉽게 아쉽게 해야 할 일 쪽으로 기울기 마련이다. 내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오랜 폭압의 그늘에서 귀막고, 눈 가리고, 입다물어 온 세상은 잠에서 깃 깨어나 '장기수'도 '전향'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청주보안감호소 비전향 출옥 제1호였던 나는 그런 세상을 향해 장기수와 전향에 관한 치

열한 이야기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아무래도 피해갈 수 없는 옥중동지들에 대한 인간적인 빛이었고, 언제나 이 세상에서 정당한 주장이 지탱되기 위한 물리적 근거로서 스스로의 불을 수명처럼 비쳐온 나의 절대절명의 의무였다. 남한에서 장기수문제 즉, 장기복역 정치범의 문제는 북한이나 사회주의의 문제와 거의 직결되는 문제로서, 그것은 6월대항쟁 직후의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해결되기 시작했다고는 해도 여전히 테러의 가능성까지도 포함하는 매우 위험한 이슈(issue)라고 인식되고 있었다. 그런 시기에 나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전향서 쓰기를 정면으로 거부해냈기 때문에 다시말해서 박해 속에서 애매하게 타협하는 일 없이 기득권세력과의 완벽한 단절을 고수해냈기에 극우 반공의 사회에서 몇몇하게 장기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며 그 운동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남한 감옥에는 200명을 넘는 장기수가 있었다. 그러나 참으로 기이하게도 사람들은 장기수에 대해서도 사상전향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장기수=북한의 간첩'이라는 도식이 완벽하게 성립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기수운동을 하는 일의 어려움은 바로 거의 모든 장기수가 간첩죄로 복역하고 있다는 데 있었다.

북으로부터의 위협은 분단상황속에서 온갖 이익을 향유하는 기득권세력의 상투어였다. 간첩이라는, 남한사회에서 특수한 의미를 갖는 개념은 이 '북으로부터의 위협'의 핵심에 자리잡으면서 북으로부터의 위협을 상징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공포와 적개심을 늘 국민에게 일깨우는 기능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나 통일을 옹호하는 그 어떠한 주장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공포 정치의 도구로서 기능해왔다. 분단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이 상징은 언제나 재생산되고 있어야 했고 50년대 초반의 북한 정치공작원도, 전쟁포로도, 해외의 친북인사도 그리고 단순 북한 방문자도 모두 간첩이어야 했다. 아니, 그 수많은 평범한 국민들도 간첩으로 만들어야 했다. 간첩이야말로 분단체제하에서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될 분단체제의 마지막 금기(taboo)였던 것이다.

간첩 논리를 깰 수 있는 것은 논쟁도 이론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구체성으로의 회귀, 간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이 했던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으며, 그런 그들이 받아들인 무법천지의 학대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加減없이 조사하고 이야기 해 나가는 구체성으로의 회귀이어야 했다. 구체성으로의 회귀는 언제나 벽에 부딪힌 우리를 살려 준다. 남한에서 분단체제를 떠받치는 이 마지막 금기를 깨기 위하여 돌파구를 연 것은 이리하여 통일운동이 아니라 바로 인권운동이었던 것이다.

나는 인권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인권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었고 노동자나 여성, 어린이나 장애인의 권리가 한국의 인권단체에서 말하는 인권의 범주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자신을 가지고 말할 수 없었고 <세계인권선언>조차 한번도 통독할 기회를 갖지 않았다. <세계인권선언> 따위는 읽어보지 않아도 훌륭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인권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3년동안의 하고 싶지 않은 장기수운동의 결과 나는 우리나라 사회운동의 한 부분에 인권운동가로서 독자적인 자리를 잡게 되었다. 나에게 인권운동을 하고 있다는 뚜렷한 의식이 없었음에도 사람들은 나를 어느 때부터인가 인권운동가라고 부르고 있었다. 장기수문제에 기울인 나의 노력을 인권운동이라고 불러준다면 나는 장기수운동을 통하여 인권운동에 임무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 과정에서 나는 인권과 인권운동의 전망에 대하여 눈을 떠가고 있었다. 구체적인 사실을 믿고 인간에 대한 억압과 싸우는 까닭에 무적의 인권운동....

* * *

196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냉전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민주화운동 혹은 인권운동의 바람이 불었으며 이 과정에서 용도폐기 되어가는 군사정권들을 대신하는 민간정권들이 탄생하기 시작한다. 70년대 후반부터 1987년의 6월 대항쟁에 이르는 한국민중의 반독재투쟁, 군사파쇼 타도투쟁은 근본적으로 이 세계사적인 흐름속에 위치한다.

오늘날 한국의 인권운동은 여전히 '유신', '5공' 당시의 피비린내 나는 반독재투쟁의 전통속에 있다. 독재 타도투쟁은 그 명분으로서 늘 인권을 앞세웠고 인권운동은 독재 타도투쟁의 과정에서 대량생산되는 인권유린 덕분에 번창했다. 말하자면 인권운동은 독립된 운동 장르였다기 보다 반독재 운동, 민주화운동의 일부였으며 그 시점에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나 寺刹까지도) '반체제'라든가 '반독재'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인권을 외쳤던 것이다. 당연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인권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의미했고 특히 구체적으로는 양심수 석방운동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흔히 독재와 반인권에 대한 대중적인 거대한 분노와 감성에 기대는 즉자적인 방법이었으며 거칠고 서투르지만 그 속에는 간절함과 끈기함이 분명히 있었다.

6월 대항쟁은 두가지 점에서 사회운동의 방식에 변화를 재촉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본질적으로 폭력적이며 강압적이었던 통치방식이 합법, 개량을 위장한 음성적 폭력방식으로 서서히 변함에 따라 대중들의 의식 속에서 분노의 감성이 무디어져, 사회운동은 그와 같은 상황변화 속에서 대중들에게 설득력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운동역량의 비약적 발전에 따르는 필연적 과정으로서 이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이제 인권을 외치지 않게 된 노동, 농민, 여성, 빈민, 환경 등 여러 전문부문운동으로 분화 내지는 전문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권운동은 자신의 입지의 운동적 전망을 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제 군사정권하에서의 끈기함을 잃어버림이 없이 스스로의 운동방식을 성숙시키고 전체 사회운동 속에서의 인권운동의 위상을 명백히 세운다는 긴급한 요청을 받고 있는 듯이 보였다. 즉, 한국의 인권운동은 변화된 상황의 도전을 받으면서 과거의 즉자적인 운동에서 자기자신의 운동적 사명과 전망을 자각한 대자적 운동으로 성장해야 했다. 바로 이런 시기에 나는 스스로를 인권운동가로서 자각하기 시작했으며, 이 한국 인권운동의 어려운 과제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의 몫이 되었다.

장기수운동을 거쳐 자신의 남은 일생을 인권운동가로서 살아갈 결심을 굳혀가고 있던 무렵 나는 인권과 인권운동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인간의 권리를 구현해 나가야 할 인권운동가는 赤裸裸한 정치적 주장을 내세움이 없이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중하면서 인간의 권리라는 언어와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무사하게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당파성(정치적 입장 내지 지향성)을 버리고 사실의 차원에만 충성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니며 그것 자체가 또다른 정치적 주장일 수가 있다. 계급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사회구조의 문제에 육박하지 않고, 인권이 구현되는 세상으로의 초월이나 변혁을 꿈꾸지 않고 그리고 조국 통일에의 소망을 갖지 않고서 어떻게 보편적으로 인권을 구현시키기 위한 고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사회의 변혁을 꿈꾸면서 인권운동을 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치중립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권리 그 자체는 이 데올로기적으로 '무색'이고 '보편적'인 것이지만 모든 분야의 운동의 場이 그렇듯이 인권운동이라는 장에는 분명히 보수와 진보의 치열한 갈등이 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변혁에의 희망은 인간의 권리를 위한 공정한 활동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 모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다. 인권운동은 변혁에의 희망을 간직함으로써 인권운동을 자신의 정치적利害에 脫脚시키려는 사악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스스로의 순결성을 지킬 수 있으며, 미래를 향해 인권개면을 보다 인간적인 것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가 있다. 변혁에의 희망은 인간성을

억압하는 기존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인권의 시각으로 말미암아 항상 구체적인 입각점을 가질 수 있으며 인간에 대한 애착을 축적시키면서 인간의 얼굴을 가진 것이 될 수 있다....

* * *

한국 인권운동을 대자적 운동으로 세우는 일, 나는 이것이 크게 두가지 과제를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한국 인권운동의 방법을 보다 계획적이고 의식적이고 전문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는 과제이며 둘째는 한국 인권운동의 운동적 의미와 이념을 강조해 나가는 일이다.

이 일의 어려움을 어슴푸레 자각했을 때 나는 더욱 큰 뿌리를 가지고 나의 삶을 갱신시키기 위하여 최대용기로 파고들었던 장기수문제로부터 최대용기로 빠져나왔다. 나의 출옥 후 불과 3~4년, 바야흐로 장기수문제는 한국 최대의 인권 이슈로 떠오르고 있었다. 장기수 후원운동에 돈이 모이지고 있었으며 옥중의 장기수들은 해마다 밖의 지원세력과 연대하면서 당당하게 단식투쟁을 벌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의 장기수를 속속 양심수로 지칭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애착을 버리는 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인간관계나 전문적인 지식을 버리는 일은 바로 불안과 애석함의 극복을 의미한다. 여기에 대하여 던져지는 沒理解와 때로는 비난까지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린다는 것은 이런 까닭에 최대용기를 필요로하고 그 최대용기에는 언제나 금욕의 아픔이 그림자 처럼 따라다닌다. 재일동포에서 내국인으로, 비전향 장기수에서 장기수문제 전문 인권운동가로 장기수문제 전문 인권운동가에서 한국 인권운동을 대자적운동으로 세우는 인권운동가로... 나의 슬픔이나 아픈 상처를, 나의 사랑이나 지식이나 투쟁을 결코 '상품'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았던 나는, 언제나 래디컬(radical)하게 나의 삶을 갱신시켜 왔으며 커다란 금욕의 아픔을 겪어 왔다. 짐은 무거웠지만 나는 언제나 나의 삶의 갱신을 기뻐했다.

한국 인권운동이 지닌 반독재투쟁의 전통은 분명 자랑스럽다. 그러나 인권운동은 단지 사악한 정치권력에 대한 중오가 아니라 반독재투쟁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운동의 과정 자체는 지극히 실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예를 들어 법률운동이나 양심수 석방운동과 같은 왜소한 운동 이상의 세계사적 시야나 인간의 가치에 대한 철학적 통찰을 포함하는 운동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당연히 군사독재시절의 정신에, 그때의 범위에, 그때의 품목에, 그리고 그때의 방법에 언제까지나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 철학을 가짐과 동시에 그것은 전문화되어야 한다. 전문화 되어야 할 인권운동의 실천적 과제는 활동영역을 자유권에서 사회권분야로 넓혀 나가는 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 정리해 나가는 일, 능동적으로 인권교육을 조직해 나가는 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론가와 활동가를 양성해 나가는 일, 그리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국제적 분업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일 등등이다.

포악한 독재의 시대에 아무 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싸웠던 맨발의 한국 인권운동에 대하여 이런 모습으로 바뀔 것을 요구하면서 나는 다시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갱신된 나의 삶을 걷기 시작했다.

* * *

젊은 활동가들에게-

저마다 쓰라린 상처를 부들켜 안고 오늘도 인간의 권리를 생각하는 활동가들!
세상이 변해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변한세상에 익숙해져도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는 슬픔과 분노를 우리는 묵묵히 간직하고 있어야 하네, 그것은 우리의 전부여서는 안되지만 분명 우리의 생명일 터이네.

서두르지 말기 바라네. 서둘러 세계나 사회를 설명하려 하지 말기 바라네. 자기에겐 세계나 사회를 설명할 능력이 없음을 개탄하지 말기 바라네. 법률가나 교수의 지식은 우리에게 분명 부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결코 기죽지 말게. 그런 것들, 우리의 삶, 우리의 희망에 비하면 결국은 왜소한 것들이네. 슬픔과 분노로 말미암아 운동가는 이 악덕과 폭력에 가득찬 오늘을 래디컬하게 거부하여 내일을 苦待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네. 우리는 현실을 조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 때문에 살아 있을 수 있고 현실을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기쁨 때문에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네. 지식을 부러워 하는 대신에 丹心을 간직해주게. 그리고 그 丹心에 긍지를 느껴주게!

운동가에게는 운동가만의 본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능력이 있네.

조리가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교수의 목소리가 고작 기실명이 참석하는 학술토론회에서만 답답하게 맴돌고 있을 때, 변호사의 법률지식과 진실의 주장이 그대 무슨 대수냐는 듯이 보수적인 판사에 의하여 목살 당할 때, 그 현실을 개척할 사명과 힘을 지닌 사람은 바로 우리와 같은 운동가들이라네. 인간의 존엄이 일상적으로 짓밟히는 이 세계에서, 무엇이든 옳다고 주장하려던 그 옳음이 옥체로써 고수하고 옥체로써 외치는 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법이고 그런 물리적 근거를 갖지 않는 주장은 대체로 허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네. 두려워 말게. 몸을 던져 주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항상 무엇이 옳은지를 주장하는 물리적 근거로서 기능해주게. 그런 씩씩한 활동가로서 남아주게.

그러나 丹心은 그저 선량한 것과는 다름을 명심해야 하네. 선량함은 의심의 여지 없이 미덕이지만 운동가가 가져야 할 충분조건은 아니네. 선량함은 자기희생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지만 丹心은 임 그 속에 자기희생을 포함하는 것이라네. 또한 운동가는 기관차 처럼 돌진하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올려야 하며 이런 활력이야 말로 다름이 아닌 丹心에서 나오는 것이라네.

살아가 주게.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고, 그러나 운동성을 잃지 말고.

살아가 주게. 때로는 자기 운동의 철학적 의미를 침잠하면서, 그러나 대중과 함께.

살아가 주게. 때로는 아득하고 깊숙히. 때로는 한없이 넓게 운동의 의미와 기술을 추구하면서.

저마다 쓰라린 상처를 부들켜 안고 오늘도 인간적 권리를 생각하는 젊은 활동가들! 험한 밥을 먹고 닳아 빠지도록 싸구려 옷 빨아 입어야 하는 너희. 휴가도 없고 定時退勤도 없는 너희.

용기를 가지고 제발 버티어 다오. 너희 나이 40이 넘어. 세상에 대한 통찰력이 충만한 능력 있는 활동가가 될 때까지. 그런 너희를 보는 것이 나의 꿈이란다.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이 바로 나의 큰 꿈이란다.

1995년 3월 16일

*

*

*

인권운동은 지극히 구체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이면서도 보편적 인권의 이념으로 말미암아 極地性에 매몰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역동해 왔고 앞으로 도 역동해 갈 인권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정지되지 않을 진보이데올로기이다. 나는 이런 인권운동

이 나의 자생의 노력을 위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좋은 자리라고 느끼고 있다.

보편적 인권을 구현하려는 인권운동은 실은 내부에 엄청난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보편인가의 해석에 달려 있을 것이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낡은 개념을 인권의 진수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인권운동은 오늘도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국가이데올로기로서의 인권을 보편적 인권이라고 강변해왔다. 그러나 보편적 인권을 자신의 정치적 利害와 일치시키려는 그 어떤 기도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가 곧 보편적 인권의 실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국 보편적 인권을 독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계급을 없애자는 주장이 근본적으로 보편적 인권 이념의 실천을 향해 열려 있는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리하여 계급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인권이론은 사이비 보편주의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그 어떠한 정치세력에 의해서도 이용당하지 않을 순결성을 간직하되 계급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인권운동을 향하여 걸음을 계속하고자 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인권개념은 天賦의 것으로서 고정된 것은 아니다. 역사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역동하는 진보이데올로기이다. 따라서 인권운동은 어떤 역사적 조건 속에서 주어진 인권을 수호하기만 하는 방어적 운동은 결코 아니다. 인권운동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의 구현을 늘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인권개념을 만들어 나가야 할 창조적 운동이며 따라서 攻勢的운동이다. 나는 수많은 소외된 대중의 해방과 찢겨진 나의 조국의 통일이 라는 나의 인간적 소망이 담긴 인권운동을 강조해 나가고 싶다.

원래 허망하게 자명하지 않기 위하여 기울이는 자생의 노력은 항상 그 과정에 자멸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법이다. 그러나 금욕의 아픔에 익숙해 있는 나는 아마도 자멸하지 않고 다시 커다란 삶으로 자신을 갱신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인권운동과 함께 앞으로 향하고 있는 한은....

우리의 인권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1993

* 감옥에서 생각했던 것들.

나의 첫번째 감옥살이는 24살 부터 41살까지, 17년 동안이었다. 세상과 단절된 감옥속에서 30살을 넘어서야 세상과 인간이란 결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가슴에 침투해왔고, 그 무렵부터 나는 구체적인 실존을 가진 구체적인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축적이 없이 사회변혁 이론에 경도해온 자신을 처절하도록 두려워 했다. 나는 구체적인 일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할 길을 갈망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일'이 뭔지는 몰랐지만 인권운동만은 결단코 아니었다. 인권운동이란 내가 생각하기엔 유럽 인권이론의 틀을 가지고 1세계의 도움을 받아가며 종교인들이나 하는 깨끗하기 짝이 없는 운동이기가 쉽상이었고, 가치중립적으로 구체적 사안에 매몰됨으로써 사회의 질적 문제를 결과적으로 은폐하는 치명적인 역기능을 가진 운동이었기 때문이었다. 세상 없어도 내가 해야 할 '구체적인 일'이 인권운동은 아니었다.

사람의 운명이란 때로 알맞은 것이어서, 그러했던 내가 17년의 옥살이를 마치고 세상에 나와 미처 장기수 장자도 모르던 세상을 향해 이젠 수 없이 "장기수, 장기수"하고 외친 것이 빌미가 되어 어느새 5년째 정신 없이 인권운동을 해오고 있다. 마치 인권운동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듯 "인권, 인권"하며 설쳐대고 있다.

나의 두번째 감옥행은(그전 옥살이에 비하면 잠깐 "오줌누는 동안"에 지나지 않았다.) 법관 나오리에 의하면 보안관찰법을 어겼기 때문이라지만 사실은 저놈의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을 두고 방자하게도 검찰이야말로 범죄자라는 주장의 선봉에 섰기 때문이었다. 감시 카메라까지 달린 독방에서 나는 솔직히 한심했다. 검찰이 백을 흑이라고 우기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앉아서 당하는 못난 우리의 인권운동이라는 것이....

감옥에 가면 누구나 정신 차리게 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마련이다. 두번째 감옥에서 6개월동안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 나는 거의 인권운동만을 생각했다. 그전 감옥에서 "결단코 아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인권운동을.

소위 조직폭력배 두목급들과 사귀면서 그들에게도 분명 보호되어야 할 인권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고, 2시간 면회실에다가 1시간 대기시간에다가 5분면회를 하고 훌쩍거리면서 돌아서는 그 많은 부인들 모습을 보면서 이 면회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 방안을 생각했고, 책 검열문제를 전국에서 소송화시키는 일대 캠페인을 생각했고, 사소한 일로 징벌방에서 두달간이나 짐승처럼 풍풍 뉘여 지내는 잠벌들의 인권을 생각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못난 우리 인권운동은 해결은 커녕 손도 못대고 있다.

한교협 인권위원회가 '5만 재소자에게 따뜻한 겨울을!' 캠페인을 벌인다는 기사를 읽으면서도 교도소의 현실이나 교도소의 인권문제에 대한 리얼리티를 눈꼽만큼도 갖지 못하고 이런 자선사업을 벌이는 목사들에게 분통이 터졌다. "이런 게 무슨 인권운동이란 말이야!"

비전향 장기수들이 누진처우규정상의 비전향 사상범 차별대우에 대한 이의라는 형식으로 사상

전향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려 하고 있으며 민가협이 사실상 이 소송운동을 주관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왜 우리의 인권운동이 그런 왜소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지, 정당성의 이름으로 권위와 힘을 가지고 정면으로 잘못된 제도에 도전하는 패기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서글펐고, 그리고 이런 일이야말로 모든 인권단체들이 힘을 모아 크게, 그리고 꾸준히 판을 벌여야 할 일인데도 왜오로지 민가협이냐고, 민가협이 어떻게 이런 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6개월간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결론은 "못난 우리. 못난 인권운동. 변해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였다.

* 변하긴 변해야 할 인권운동, 왜 변해야 하나?

오늘날 한국의 인권운동을 특징 짓는 것은 '유신5공'시대의 피비린내 나는 반독재투쟁의 경험이다. 물론 이와 같은 독재의 상황은 지금도 본질적으로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이 한국 인권운동의 특징은 지금도 간직해야 할 미덕이다.

'유신5공'시대의 인권운동은 인권운동으로서 독립된 독자의 사회운동장르였다기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민권운동',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리는 운동이었으며, 그것은 여타의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과 서로 얽히며 경계가 다분히 애매한 것이었다. 거칠고 서툴렀지만 간절함과 뜻뜻함을 한몸에 지니고 있던 이(말하자면) '원초적 종합운동'에는 '6월항쟁'을 전후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6월항쟁'은 두가지 점에서 사회운동의 방식에 변화를 재촉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노골적으로 폭력적이며 강압적이었던 통치방식이 합법개량을 위장한 음성적 폭력방식으로 서서히 변함에 따라 사회운동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의식 속에서 간절함의 정도가 떨어져, 사회운동은 그와 같은 상황변화속에서 대중들에게 설득력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운동역량의 비약적 발전에 따르는 필연적 과정으로서 '원초적 종합운동'이 각 부문운동으로 분화 내지는 전문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인권운동은 노동, 농민, 여성, 빈민, 공해 등등의 분야가 각자의 운동영역을 확립하면서 '원초적 종합운동'에서 떨어져 나가는 상황 속에서 인권운동은 자신의 입지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제 '원초적 종합운동'의 뜻뜻함을 잃어버림이 없이 스스로의 운동방식을 성숙시키고 전체 사회운동속에서의 인권운동의 위상을 확립시킨다는 긴급한 요청을 받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인권운동은 인간의 모든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이다. 우리를 당혹케 하는 이 대상의 광대함 막연함 때문에 (역량만 갖추어진다면) 인권운동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하여 그 부문 내부에서 다시 부문화, 전문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6월항쟁'을 거쳐 근본적으로 바람직한 이 부문내 부문화, 전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나 각 인권단체는 아직도 영세성을 면하기 어려운 '구멍가게'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전문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고 동원력이 없는 이들 여러 단체를 수평적으로 연대케 해줄 그 어떠한 장치도 우리의 인권운동은 갖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인식은 우리의 '못난' 인권운동이 '잘난' 인권운동으로 변신하기 위한 길을 스스로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종교단체 인권위원회가 '판을 치는' 바람에....

그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어느 유명한 인권단체의 실무책임자가 난감한 표정으로 고백했다. "사실 인권운동이 뭐냐는 문제가 답답해요..."

물론 나 역시 답답하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치열한 인권운동은 있어 왔지만 인권운동이 뭐냐, 전체운동 속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하느냐의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은 없었다. 여기에는 인권운동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의 격무에 시달려 그런 학습과 논쟁을 위한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그 보다도 더 심각한 요인은 비종교권 인권운동이 유능한 활동, 이론가를 풍부히 보유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인권운동은 '유신 5공'정권에 의한 적나라한 피의 탄압속에서 종교단체의 '우산' 아래 종교단체에 의해 주도, 발전해 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종교 단체들은 이 부문에 있어서 빛나는 업적을 남겼고 **교 혹은 ##교 인권위원회가 '판을 치는' 일 자체는 조금도 나쁜 일일리가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은 상대적으로 비종교권 인권운동의 위축이라는 결과를 부산물로서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게 한다. "정의와 인권 옹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논리, 교단의 엄청난 보수성이라는 '끈'에 묶이면서 전개하는 인권운동, 게다가 인권운동에 간혹 끼어드는 자선사업적(자선사업을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자선사업은 인권운동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의미이다.) 요소... 사회과학적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현대의 비종교권 젊은이들이 이런 인권운동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제 못난 우리의 인권운동에 있어서 비종교권은 신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인권운동 개념을 과학적으로 정립해나가는 노력, 젊은이에게 매력적인 인권운동의 비전을 세워나가는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구멍가게, 구멍가게, 또 구멍가게!

'6월항쟁'을 거쳐 부문화, 전문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권운동은 그러나 그 각 단체의 규모에 있어서의 어쩔 수 없는 영세성 때문에 진정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구멍가게, 구멍가게, 또 구멍가게!'인 것이다.

각 단체는 동원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건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힘도 없다. 각 단체 실무자들은 자기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관리, 회원관리, 사무실 유지를 위한 수습사업과 기타 잡무들만도 벅차다. '초인적 능력'을 발휘해도 전문성의 축적이나 연대사업이 소홀해지는 것은 당연하며, 우리 인권문제를 국제화시키는 일이나 외국단체들과의 국제적 연대 따위는 그야말로 엄두도 낼 수가 없다. 전문성도 인력도 장비도 빈약하기 때문에 개개의 인권탄압 사건에 대한 대응은 늘 공권력측 보다 몇발짝씩 늦는 '형광등' 혹은 '16bit짜리 컴퓨터'이다. 즉각 대응하는 경우도 대체로 즉자적, 감정적 대응에 그치고 대중들에 대한 설득력을 결하기가 심상이다. '원초적 종합운동'의 '힘 모으기'를 잃어버린 댓가로 우리의 전문성을 붙잡지 못한다면 못난 인권운동의 앞날은 더욱 암담할 뿐이다. 우리는 이 상황을 기어이 돌파해야 한다.

*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아닌, 흐지부지 없애는 운동?

따지고 보면 '구멍가게'이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도무지 우리 인권운동은 자료에 대한 관심과 집착이 희박하다. 외국의 어느 인권운동가는 말했다. "인권운동이란 그 운동의 과정 자체가 자료의 축적의 과정일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인권운동은 묘하게도 자료를 흐지부지 없애는 운동인 것 같군요..."

우리나라 인권단체 중 아주 풍부하지는 않더라도 자료를 깔끔히 정리하고 여차하면 즉각 검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단체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고 싶다. 언제나 사건이 터지면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감정적 대응을 하거나 사무실 어느 구석엔가 처박아놓은 자료를 찾다찾다 못 찾아서 혹은 여기저기 자료를 구하러 다니느라 즉각 대응을 못하고 만 일이 없는가 묻고 싶다.

자료가 없기도 하지만 흩어져 있거나 정리가 안되어 있다. 그런 자료는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어도 자료로서 아무 쓸모가 없다.

얼마 전 사노맹사건의 백태웅씨가 안기부에서의 약물투여 의혹을 호소한 적이 있었다. 우리는 약물투여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못한 채 그냥 그런가 보다고 넘기고 말았다. 그것을 밝히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고문에 자주 쓰이는 약물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만 있었으면 어쩌면 진상을 밝힐 단서라도 잡았을지도 모르고 즉각 효과적인 대응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은 우리의 인권운동사에 있어서 필적감정의 신빙성이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었고 우리 인권운동에 귀중한 경험을 남긴 사건이었다. 만약에 유사한 사건이 과거에 있어, 그 경험과 자료가 제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면 좀 더 나은 결과로 끝났을 가능성은 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경험과 기록을 흐지부지 없애버린다면 후일 일어 날지도 모를 유사사건도 망쳐버리기가 쉬운 것이다. 필적감정 문제는 항상 대형 인권사건에 얽힐 가능성을 가진 문제인 것이다.

어느 인권변호서는 자료 구입비로 한달에 10만원 가량을 지출한다고 했다. 모든 인권변호사, 학자, 인권단체가 한달에 10만원으로 구입한 자료를 함께 공유하는 모습을 상상해보고 군침을 흘리는 것은 한달 나의 백일몽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한편에서는 다급하기가 뿔 빠지게 자료를 구하고 있는 데 다른 한편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하거나 심지어는 꼬박꼬박 놓고 있는 '쪽제비'와도 같은 작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고작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 이젠 공부 좀 해야지

인권단체 실무자들이 이젠 공부 좀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 그 단체에서 실무자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진지하게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맨날 일에 치이고 지쳐 걸레조각이 되면서도, 변호사나 학자들로 부터 '운동권의 사업방식'에 대한 빈정거림이나 듣고 모욕감을 느끼다가 결국은 인권운동에서마저 떠나버리는 젊은이들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나는 감히 예언한다. 장차 전문성을 갖지 못한 활동가는 자꾸만 전문화되어가는 인권운동에서도 태될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각 단체는 이점을 명심하여 활동가들을 좀더 아껴주면 좋겠다. 단체를 초월한 인권운동 실무활동가들의 정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세미나 같은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이다.

인권운동가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점은 인권변호사들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지일 터이다. 학자(인권이론), 변호사(법률실무), 인권단체 실무자(현장감각)가 함께하는 입체적 세미나는 불가능한 것일까. 원래 인권이론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에서 나와야 하는 것일 텐데...

*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라! 그런데 물고 늘어질 사람이 어디 없나...?

사건의 중요성은 뼈저리게 이해되지만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결판 내고야 마는 인력이 없

다는 불평은 모두가 하는 바이다. 어쩔 수 없다. '구멍가게'니까...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체념하고 말아야 하는 것일까. 이리하여 억울한 사건, 그것도 이 시대를 상징할 만한 중요한 인권사건들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져 자꾸만 '홀려간 옛이야기'가 되어간다.

필가는 소위 '유서대필사건'을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붙잡고 있다. 사람인지라 가끔은 다 팽개치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유혹도 간절하다. 이 일에 매달리는 바람에 다른 일을 소홀히 한다는 편견도 뼈아프게 감수한다. 하지만 이 일은 아직 손에서 놓으면 안될 것만 같아서 '죽을 맛'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다.

'죽을 맛'일 때면 이런 생각을 해본다. 사람이 없다. 그건 그렇다. "운동권"내에는. 하지만 "운동권"외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운동을 하는 사람만 운동을 해왔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 정서는 대체로(그리고 가끔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그것은 우리 현대사의 특징으로 보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건 그것대로 미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얼핏 보기에 정치적인 것과 거리가 있는 구체적인 인권문제(혹은 사건)를 절대로 오래 붙잡고 늘어지지 못한다. 자꾸만 회의가 생기고 초조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다. "내가 왜 이런 걸 붙잡고 있어야 되지? 내가 할 일은 이게 아닌데..."

그러나 뜻 있는 시민들은 다르다. 아이들을 웬만큼 키워놓고 뭔가 보람된 일을 하고 싶은 주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세고 숫자 적고 흥정하고 하는 일에 신물이 나는 직장인, 아직 활동할 수 있는 나이에 정년퇴직해야 하는 아저씨들, '운동권'에 선뜻 몸을 던지지 못하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에서 탈출하는 행복감과 함께 이들이 하나의 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드디어 결판을 내고야마는 드라마는 외국에는 심심치 않게 있다. 그런 속에서 이들은 간혹 직업적인 인권운동가 뺨치는,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일도 있는 것이다.

'유서재판'이 한창일 때 필자는 시민적 상식과 동떨어진 제멋대로의 편파적인 재판을 하는 재판부를 보면서 일반 시민들이 주요공판을 조직적으로 모니터로서 방청하고 그 소견을 세상에 공표해나가는 '재판을 감시하는 시민 모임'같은 것을 구상해본 일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보편화된 장기수 후원사업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런 시민운동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후원'에 중점이 두어지는 조건에서는 인권운동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못난 우리 인권운동은 시민들의 건전한 양식속에서 인권운동의 무한한 가능성을 캐내어야 할 것이다. 충격적 사건이 일어날 때 우우-- 물렸다가 이내 다른 사건이 일어나면 하던 일을 팽개치고 그 쪽으로 우우-- 물러가버리는 그런 악습(!)은 이제 그만 옛날 얘기가 되어야 한다.

* 자기 단체의 명예를 걸고 맨발로 뛰어라!

사람 사는 세상, 이기주의는 아무래도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의 단체 이기주의는 참으로 곤란하다. 소속단체로부터 그야말로 쥐꼬리 끝부분만한 활동비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순 맨발로 뛰면서도 간혹 가다가 다른 인권단체들을 따돌려 놓고 자기 단체 이름을 빛내기 위해 머리를 푹푹 짜내는 활동가들을 불러치면 나는 서글프다 못해 운동 그 자체가 싫어질 때가 있다.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에 인권단체마다 기념행사를 갖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는 것일까. 인권상 제정도 제발 하나로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눈에 띄는 방식도 언론 플레이도 분명 우리나라 같이 거대한 공권력이 횡포를 일삼는 나라에서는 필요하다. 그렇다 치더라도 가시적이고 과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사업과 행사는 너무 많고, 눈에 띄지 않고 마스크도 타지 않는 꾸준한 장기적 사업이나 연구, 자료 축적, 혹은 인권사건의 지속적인 추적같은, 이를테면 내실을 다지는 사업은 너무 빈약하다. 거듭 말하거니와 '아무개에게 **보내주기 운동'이나 '아무개를 위한 ##보급자리

마련운동' 그것이 아무리 요란벽직하게 벌인다 해도 엄밀한 의미에서 인권운동이 아니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몇년 전에 어떤 단체 실무자가 고생 고생 해가며 쓴 인권리포트를 다른 단체가 즉각 영어로 번역해서 자기 단체 이름으로 해외에 짝악 돌린 일이 있었다. 경쟁적 관계로 인한 결끄러움, 감정의 앙금은 이렇게 해서 쌓여간다.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를 자멸의 길로 자멸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더욱 비난받아야 할 일은 어떤 사건을 혼자 힘으로 감당해나가고 해결할 자신도 각오도 없으면서 다른 단체들을 따돌려 놓고 먼저 기자회견을 터뜨려버리는 작태이다. 어느 단체에도 이런 유혹은 있게 마련이지만 이에 이르면 솟제 '범죄행위'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은 없을 것이다.

* 이름만 걸어놓은 게 '공대위'? -우리는 함께 갈 수 없는가?-

'**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많은 경우 (아주 못된 표현을 사용한다면) '유령단체'이다. 우리는 슬프게도 이 '유령단체'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공대위'가 유령단체가 되는 원인은 대개 그것을 실무적으로 책임지려는 단위 즉 특정한 실무책임이 없기 때문일텐데, 이유야 어떻든 각 단체에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인력과 분담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리하여 '공대위'라는 시도에 대한 냉소가 우리들 사이에 팽배하게 된다. "각자의 영역에서 초능력을 발휘할 수 밖에 없다"는 체념어린 탄식이 새어 나오게 된다.

이 공대위가 '유령단체'가 되기 쉬운 우리의 현실은 오래 전부터 우리의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는 몇몇 인권운동가 사이에서 논의 된 인권운동연합 결성의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인권운동연합, 즉 '원초적 종합운동'에서 역사적 필연에 의해 부문분화가 이루어진 연후에 다시 이루어져야 할 '의식적 종합운동'은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거의 불가능하다. 인권운동 연합이 거대한 '유령단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본부, 즉 실무책임이 있어야 하고 그 존재를 담보해 주는 재원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인권운동 각 단체간의 최소한의 애정과 연대감이 있어야 한다. 각 단체의 한계를 함께 극복하려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

함께 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여러 단체의 연합 문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인권운동을 위하여 노력하는 학자, 법조인, 활동가(그리고 시민)가 인권 운동가로서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못난 인권운동이 잘난 인권운동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따로 따로 돌아서는 안된다는 자각이 지금의 우리에게 없는 것 같다.

물론 지금도 부분적으로, 그리고 한정적으로 결합은 있다. 아무개 변호사는 무슨 단체 공동의 장, 아무개 교수는 무슨 단체 인권위원하는 식으로, 그리고 아무개 변호사는 공안사건을 무료변론하고 아무개 교수는 후원금을 낸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유기적 결합은 아니다.

아무개 교수는 연구실에서 만들어낸 이론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닌, 아무개 변호사, 아무개 활동가와 적극적으로 자료를 교환하면서 세미나나 조사를 함께 함으로써 현실감각을 익혀야 하며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인권이론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개 변호사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담당 그자체를 인권운동으로 생각하는 의식의 껍질을 깨고 스스로를 인권운동가로서 자각해야 한다. 아무개 활동가로부터 현장감각을 공급받아야 하고 함께 사건을 추적을 해야 한다. 아무개 교수에게 살아 있는 법의 모습을 제공하면서 그것을 흡수하는 교수로부터 살아 있는 이론을 공급받아야 한다.

아무개 활동가는 아무개 교수, 변호사에게 현장감각을 제공하면서 자료와 이론적 전문성을 공급받아 현장활동을 더욱 세련시켜야 한다.

요컨대 그냥 결합하는 것이 아닌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변화를 예감하는 하나의 구상

못난 우리 인권운동의 현실을 타개하고 인권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나는, 여러 인권단체를 수평적으로 관통하면서 구명가게인 여러 인권단체에 자료와 전문성, 그리고 활동인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헌신적인 단위, 기존의 단체의 규정성에서 자유로운 단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같은 문제의식 아래 만들어지고 이미 준비단계에 들어간 어떤 구상이 있다. 다만 이 구상은 재정사정이나 인적구성이 가능한 한도에서 아쉬운대로 가장 시급한 부분적 사업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기구는, (1) 학자에 의하여 지도되고 전담실무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자료실, (2) 학자와 변호사와 활동가가 함께 세미나에 참가하는 여러 연구분과, (3) 여러 인권운동 단체와의 원활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한 튼튼한 대외협력 부서와 조직부서 등을 포함하는 사무국, 그리고 (4) 그 조직부서에 의하여 조직되고 관리되는 비상근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팀들로 이루어진다.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자, 법조인, 활동가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인권운동의 이론과 실천의 종합을 이루어나간다.

(2) 연구분과에 있어서 실천에 활용 가능한 인권의론의 개발에 힘쓰며, 인권운동에 있어서의 가능한 한 고도의 전문성을 축적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여러 인권운동 단체에 공급한다. 아울러 인권운동의 개념을 정리해 나감으로써 사회변혁운동 속에서의 인권운동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해나간다.

(3) 연구분과 내의 기획분과(가칭)에서는 잇따라 일어나는 주요 인권사건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입체적 분석을 즉각 시도함으로써 그 분석내용과 거기에 대한 대응책까지도 인권, 민주화운동 진영에 제시할 것을 목표로 한다.

(4) 자료실은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인권관련 자료를 수집, 축적하여 과학적 방법으로 정리하면서 인권침해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관련자료를 즉각 검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이 자료는 각 인권운동 단체에 대하여 늘 열려 있어야 한다.

(5) 연구분과 내의 국제인권법 분과와 사무국에서 세계의 주요 인권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국 인권단체와의 정보교환을 항상 유지하면서 이 네트워크를 국내의 인권단체가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시민운동으로서의 인권운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민 인권교실을 운영하여 그 교실을 매개로 비상근 시민활동팀을 조직해나간다. 직장인, 주부, 자유업자, 학생 등을 그 희망과 능력에 따라서 교육하여, 주요 재판의 모니터, 특정 사건에 대한 추적팀, 여러 인권단체에의 지원팀 등으로 활동케 한다. 이 사업을 통하여 인권운동의 저변을 확대시켜 인권운동 인자(활동가, 이론가)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도록 노력한다.

이 구상은 결코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논의는 아직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모가 있어야 하겠지만 아주 크지 않아도 성격만 뚜렷하면 될 것이다.

이 시도가 여러 인권운동단체들과 경쟁적 관계에 놓이는 또 하나의 자기 규정성에 얽매인 '구명가게'의 개설이라는 결과로 끝난다면 우리의 꿈은 실패할 것이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여러 인권단체들의 환영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밀고 나갈 것이다. 우리를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못난 우리의 인권운동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런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는 인권운동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개별적, 기술적, 일회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관련 법률, 제도 관행의 개선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민주화의 과제를 지닌 사회에서는 인권운동의 과제와 성과가 곧바로 민주화운동의 그것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들테면 국가보안법이나 노동악법을 개폐하는 문제는 민주화 그자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과거 박종철 사건, 성고문사건 등에서 보듯이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폭로됨으로써 민주화운동 전반에 중요한 진전의 계기가 됐다. 이같이 우리의 현실에서 인권운동은 민주화운동의 핵심적 부분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3. 어떤 조건들 아래 놓여 있는가?

(가) 인권의 보장이란 무엇보다도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대 정권이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오고 있는나 하는 것은 인권운동을 조건지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정권은 본질적으로 정통성에 결함이 있는 독재정권이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권운동은 민주화운동과 직결돼 있었기 때문에, 인권운동이 전진하게 되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었다. 예컨대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노동3권 등을 보장하게 되면 정권의 독재적 본질이 금방 드러나고 그것에 대한 국민 대중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정권의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하여 역대 정권의 인권 정책은 정치적 반대자들의 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국민대중의 정치적 각성 및 조직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물론 제 1공화국에서 제 6공화국까지의 인권 탄압의 강도나 수법이 거의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이승만 정권 당시에는 냉전이데올로기와 남북분단 상황의 압도적 규정력으로 말미암아 사상범과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는 가혹한 탄압이 있었지만 그 밖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정치권력에 의한 인권탄압의 정도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사법부의 독립과 언론의 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됐다.

제 2공화국은 논의로 치고,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도 이른바 유신 이전까지는 5.16 쿠데타 후의 비정상적 시기를 빼고는 뒷날에 비해서는 인권 상황이 괜찮았던 것 같다. 그러나 학생을 중심으로 한 정권반대투쟁이 강화되면서 6.3사태 무렵부터 대학생들이 투옥되는 등 박정희의 인권탄압의 강도가 높아지다가 급기야 10월 유신이라는 쿠데타에 이르렀다. 그 결과 만들어진 제 4공화국은 일련의 긴급조치와 국가보위에 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 등에서 보았듯이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존권적 기본권을 가장 혹독하게 유린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돌연한 사망 후 12.12, 5.17 쿠데타를 통해, 또한 광주 항쟁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을 거쳐 성립한 제 5공화국에서도 유신시대에 못지 않은 인권탄압 정책이 계속됐다. 1983년 경 이후 이른바 유화국면이 조성되기도 했으나 국민대중들 사이에는 여전히 공포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6월 항쟁에 이어 제 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사정은 꽤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선 중앙정보부/안기부, 경찰 등 억압기구를 동원해서 사법부 등 인권관련 국가기구와 언론기관 등은 물론이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비롯해 거의 모든 국민의 활동을 공공연하게 감시, 통제하다시피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연행, 감금, 고문 등으로 최소한의 신체의 자유조차 유린하던 과거의 무단적 인권침해는 대폭 줄었다. 이와 함께 숨막힐 것 같은 권위주의와 공포의 분위기도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의 활동을 탄압하며 노동자 등 민중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상태는 여전히 지속됐다. 한때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인권상황을 실질적으

로 진전시키기 위한 제반 개혁입법이 시도되기도 했으나 뒤이은 3당 합당에 의한 거대여당의 출현 등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옛 시대 이래의 비민주적 법률은 사실상 그대로 남아 위세를 부리고 있고, 그러한 법률에 따라 투옥된 양심수는 도리어 종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제 6공화국 정권은 권위주의적 분위기의 개선, 헌법재판소와 언론의 활성화 등 인권상황의 일정한 진전과 우리 사회 깊숙히 뿌리내리고 있는 냉전의식, 그 동안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분위기 등을 활용해 인권문제에 관한 대내외적으로 공세적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제 민주화는 완성됐고 아직도 악법의 개폐나 민중의 생존권의 보장을 외치는 세력들은 대부분 좌경폭력세력이거나 경제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과격분자들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한국에 양심수는 단 한명도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 1989년 이후 양심수에 대한 석방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 (과거의 정권도 양심수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거의 연례행사처럼 양심수의 석방을 행하는 등 암묵리에 그 존재를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1990년 7월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고 그 이사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강력히 역설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공세를 취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정부 대표가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기까지 했다. 이제 정부는 비민주적 법률들에 의해 합법성의 외피를 쓴 상태로 당당하게 인권의 탄압에 나아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등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예컨대,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제3자 개입금지,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 등의 문제에 대한 비민주적 법률의 상존, 그것들의 합헌성을 승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이 법률을 광범위하게 적용시키는 검찰과 법원의 태도 등은 현 정부의 양두구육과 같은 인권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나) 모든 운동은 대중을 획득하기 위한 활동이며 인권운동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수립된 이래 걸음으로는 민주주의 헌법 및 제도와 민주적 인권이론이 도입됐고 적어도 교과서에서는 그것들이 가르쳐졌다. 또한 그 동안 민주화운동의 성과로서 인권보장이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획득, 유지해야 할 귀중한 가치라는 인식이 국민대중에게 확고히 뿌리를 내렸다. 인권운동의 대중적 기반은 잠재적으로는 매우 넓고 튼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갖가지 종류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실질적이고 내용있는 인식이 대중 사이에 공유돼 있는가 하면 이 점은 매우 미흡한 듯하다. 이를테면 사상 및 표현의 자유라든가,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수사와 재판의 원칙 등이 왜 보장되고 지켜져야 하는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시위나 노동쟁의를 기본권의 행사로 당연시한 다음에 그 한계를 생각하기 보다는 도리어 그것들을 처음부터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이는 그 동안 독재권력 아래에서 봉건적 인습의 청산과 근대적 인권의식의 발전이 제한돼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가령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상당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권운동을 위해 자기의 노력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기부하는 등으로 참여 또는 지원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가진 국민은 매우 드문 실정에 있다. 이것은 과거 정권의 탄압을 생각할 때에 당연한 일이지만, 제 6공화국에서 인권운동 자체에 대한 탄압의 정도가 현저히 약화됐음에도 그 사정이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권운동은 인적으로든지 물적으로든지 대중적 기반을 실제로는 거의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나 사람들의 구체적 역량은 어떠한가? 앞에서는 여러 단체 중에는 상당한 인적, 물적 역량이 있는 것(대한변호사협회, 교회협인권위 등)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인권운동을 위해 가동되는 역량만을 생각하면 매우 미약하다. 그 밖의 단체나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 역량이 취약하며 특히 재정적 기초는 전혀 없다시피 한 것으로 느껴진다. 거의 모든 단체가 매일 소수의 상근 인력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상근자가 그 단체의 일상적인 조직업무를 수행하는데만도 바쁜 까닭에 인권운동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준에 이르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현재의 주체 역량은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4.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

(가) 유신 이전에는 인권운동이라고 할 만한 조직적 활동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유신 이후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많은 정치범들이 생겨나고 이들을 변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이 조직화됨으로써 처음으로 인권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태동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수명의 인권변호사들은 자기들까지 중앙정부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그 중 한명은 구속기소되기도 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이에 굴복하지 않고 수많은 정치범들을 집요하게 변호하는 헌신성을 보였다. 그 이후 이 인권변호사들은 20년 가까이 모든 정치범과 양심수들을 도맡아 변호함으로써 "인권변론"이라는 인권운동의 부문을 개척했다.

이어서 교회협 인권위 등 종교단체가 가세했다. 이들은 비교적 풍부한 상근인력과 재정상태, 국제적 연대를 확보하여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고 양심수등을 지원하며 기도회등 집회와 정기적인 간행물의 발간 등 여론 확산작업을 꾸준히 벌여왔고 현재도 이 단체들이 가장 강력한 인권운동의 주체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두개의 축을 중심으로 펼쳐진 인권운동은 민주화운동의 일부로서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독재권력이 저지른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파헤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비민주적 법률, 제도와 관행의 부당함을 지적해 여론화시켜 독재권력의 존립근거를 제거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비록 많은 국민대중이 인권운동에 직접 동참한 것은 아니었지만, 독재권력의 무단적 탄압 아래에서 인권운동의 정당성은 대중들의 눈에 자명한 것으로 보인 까닭에 인권운동을 포함하는 민주화운동은 다수 대중의 지지를 얻었다. 그리고 이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6월 항쟁의 결과 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조치를 끌어냈으며, 그 공의 상당부분은 인권운동에 돌려져야 마땅할 것이다.

(나) 수십년에 걸친 민주화운동의 성과가 그 운동을 주도한 세력의 집권이 아니라 구 시대 정권 담당자들의 계속된 집권으로 이어지면서 인권운동은 여러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 6공화국에서 인권상황의 부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정부가 그런 개선 등의 성과를 과대선전하는 따위의 공세적 자세를 보이면서 인권운동은 대중의 눈에 과거와 같이 그 정당성이 자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운동은 신속하게 대중에게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풍부한 논리를 개발하고 그것을 대중들에게 전파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요청됐다. 제 6공화국에 들어 많은 인권단체들이 새로이 생겨나거나 과거의 체제를 정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런 활동을 벌였으나, 주객관적 조건의 취약함 때문에 흠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 현재 우리 인권운동에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기로 한다.

1) 인권운동의 바탕이 되는 갖가지 종류의 인권에 대한 깊이 있고 내용이 풍부한 연구가 이루어

어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국가보안법에 대항하려면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석이 미약하다고 느껴진다. 이것은, 첫째 관련 학자나 연구자의 수가 매우 부족하며, 둘째 그나마 있는 연구자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일선 활동가(변호사 포함)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어 현실성 있는 이론을 만들어 내기 힘들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리하여 현재의 인권운동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도 없는 개업 변호사나 활동가들이 깊은 연구없이 창출한 이론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학자와 연구자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일선 활동가들과 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인권운동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 정보 및 자료들을 모아 정리하고 공유하는 체계가 수립돼 있지 않다. 현재의 많은 인권단체들의 역량을 모아 인권 자료실 따위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연구성과를 일선 활동가들에게, 또한 나아가서는 국민대중들에게 전파하는 전달체계가 빈약하다. 일선 활동가들에 대한 전파문제는 연구자와 활동가 사이의 협동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대 국민 전파문제는 언론 매체의 활동 등을 연구해 볼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상당한 재정적 기초를 확보해야 한다.

4) 인권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기민하고 정밀하게 벌이고 그 조사 결과를 냉철하게 분석해 신중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일종의 통제절차가 결여돼 있고, 이는 인권운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관련돼 있다. 이를테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관련 증거를 치밀하게 조사하거나 하려는 노력이 선행됨이 없이 단정파 규탄에만 힘을 쏟게 되면 결국 역공을 받게 되거나 그 진상 규명의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연합 인권위원회와 같은 본격 재야단체 소속의 인권기구의 활동이 기대된다.

5) 국제인권기구나 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개선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국제적 기준의 공급처로서, 또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압력의 산실로서, 국제기구나 단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6) 대중이 참여하는 인권운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인권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실제로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다.

5. 맺음말

인권운동은 제 6공화국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문민정부 아래에서 그 영향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권운동의 잠재적 기반은 매우 넓고 튼튼하지만 현실의 구체적 역량은 매우 취약하다. 이런 취약한 역량을 가지고 새로운 국면에 대처하여 잠재적 기반을 현재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운동 종사자들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자기 희생적 태도가 요청된다. 제반 인권단체들은 인권운동의 내실과 효율을 다지기 위해 항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사회적인 조건이나 역사적인 조건을 달리하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에서 강요하는 인권의 잣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주로 개발독재국가들입니다.

용이 규정돼야 한다는 말은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전홍운: 보통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는 경제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 인권의 내용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서준식: 인권의 보편성을 반대하는 나라들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현실적인 측면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명백한 인권침해를 경제적 조건을 들어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회적인 조건이나 역사적인 조건을 달리하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에서 강요하는 인권의 잣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주로 개발독재국가들입니다. 말하자면 박정희가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요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뿐이죠. 개발독재국가들 중국, 쿠바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쿠바는 여타 개발독재국가들과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이들은 미국의 인권정책 즉, 인권문제를 가지고 중국이나 쿠바를 전복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서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홍운: 인간의 권리에 대해 언급한 최초의 문서로 흔히 '세계인권선언'을 들고 있습니다. '선언'에 나타난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최근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준식: 오늘날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 처음 문서로 정리한 것이 바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입니다. 따라서 인권선언에 있는 모든 조항은 인권의 구체적인

전홍운: 안녕하세요. 함께길을 창간 6주년 기념 특별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인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인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권'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서준식 선생님이 생각하고 펼쳐나가는 '인권'과 '인권운동'의 내용과 폭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준식: 인권이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도 쉬운데요, 그렇다면 사람의 권리가 무엇이나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사람의 권리는 다른 많은 기본적인 것이 그렇듯이 역사적, 사회적 개념입니다.

근대 시민사회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권리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권리개념인 자연권의 내용은 경제적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돼 오면서 무한전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이런 과정을 거쳐 인권의 내용은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내용이 옮겨오는데 전형적인 것으로는 파리공약을 들 수 있습니다. 파리공약은 보불전쟁 때 프로이센이 프랑스로 쳐들어와 파리가 점령될 위기에 처했을 때 왕족 귀족 정부군은 모두 파리의 외곽 베르사이유로 도망간 공백기간에 시민군이 세운 자치체로 여기도 나름대로의 인권보장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 이런 흐름들은 현재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권개념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와는 다른 흐름으로 근대 시민혁명 과정에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개념은 서구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역사적 접근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대전 후에 세계는 하나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세계와 고립돼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사회적인 조건보다 역사적인 조건이 인권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요즘에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인권의 내



내용에 속한다고 봐도 됩니다. 인권선언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두 부분으로 전자는 자유권 그리고 후자는 사회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선언이기 때문에 이걸 지킬 필요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언젠가는 조약화해야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1966년 '국제인권협약'으로 조약화했어요. 국제인권협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B규약)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A규약)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조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5개국 이상 가입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76년부터입니다.

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규정한 B규약에 의하면 개인이 국가나 정부로부터 받은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는 1990년 가입한 이래 지금까지 3년동안 단 두건의 제소밖에 없을 정도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권'에는 3세대가 있다고 하는데 1세대는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 나타난 자유권적 인권이며 좀더 역사가 진전되고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 드러나면서 나타난 사회보장적인 인권을 2세대라고 합니다. 생존권, 자결권 그리고 자원, 식량의 권리 같은 3세대 인권은 아직 정리된 문건은 없지만 조약으로서 성립

돼 가고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인권이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3세대 인권은 집단적 인권이라고 볼 수 있지요. 아마 2천년대 이후라야 1, 2세대 인권처럼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민'과 '인권'

전홍운: 최근 인권과 인권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의식의 성숙이 뒷받침된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노동운동, 정치운동의 약화와 맥을 같이하는 다양화 현상 중의 하나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와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운동'이 가지는 역할과 위상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지요.

서준식: 인권과 인권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유신, 5공때 인권에 관한 관심이 높았죠. 왜냐하면 적나라한 폭력, 이걸 국민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 놓고 말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인권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운동전체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운동전체가 아직 부문별로 분화가 안돼 반독재투쟁만 있었지 노동운동, 여성운동 등 사회운동이 아직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걸 '원초적 사회운동'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운동전체가 반독재투쟁의 명분으로 인권을 내세웠죠. 이런 이유로 운동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6월 항쟁을 겪으면서 민중역량의 증대에 따른 분화, 이걸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긴 한데 문제는 분화가 가속되면서 자신의 영역에만 몰두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87년 이후 특히 6공 때 교묘한 언론조작과 보혁논쟁을 통해 '인권'을 외치는 사람은 소수가 돼 버리고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얽어져 갑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문민'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싸버리면서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을 점차 잊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치기술이 고도화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인권침해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분노의 강도는 자꾸 떨어져가고 인권이나 인권운

동에 대한 관심도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노동운동이나 다른 운동의 약화와 맥을 같이하는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 운동의 다양화 자체는 분명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87년 6월 항쟁을 고비로 민가협, 유가협 그리고 군인, 경찰의 인권을 옹호하는 모임이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다양한 단체가 생겨난 것처럼 다양화, 전문화 현상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화를 추구하다 보니 규모가 영세해지고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전문성으로 향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화 속에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식적 종합운동이 인권운동 내부는 물론 전체사회운동에서도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홍운: 유신이나 5공 내 적나라한 폭력에 대한 반작용 때문에 인권이나 인권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했는데 뚜렷한 상황 변화없이 문민이라는 말로 오히려 인권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는 것은 어찌보면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존재하는 인권운동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서준식: 그렇지요. 우리나라의 인권운동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인권운동이란 것은 원래 작용에 대한 반작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권이 의식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인권의 항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전문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부분이 전문화되면 될수록 운동도 전문화 되어야 하는데 인권운동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한가지 문제에 열중하는 것은 결국 사물의 본질에 육박하는 것입니다. 장애우 문제를 보더라도 사회구조로부터 장애우의 인권 유린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인권운동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정치적 탄압에 대한 반작용만 가지고는 인권운동의 지평을 더이상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전홍운: 이와함께 단체의 영세성과 재정난은 운동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데 지금까지 이문제는 의외로 간과되어 왔던 부분이

그래서 인권운동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정치적 탄압에 대한 반작용만 가지고는 인권운동의 지평을 더이상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서준식: 재정문제는 어디서나 다 큰일이죠.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있고 다른 단체를 침범하지 않는 사업이 어느 정도는 재정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운동의 가장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재정을 만들어 내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예술의 경지에 올라야 운동 자체는 물론 사람들이 버텨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재단이나 기업이 사회운동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어용학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멀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스스로 지켜야 할 권리

전홍운: 그동안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어땠는지요. 종교단체가 중심이 됐던 그동안의 흐름이 적극적인 해결책보다는 소극적인 방법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준식: 극히 예외적인 것을 빼놓고는 70년대부터 인권운동이 시작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70년대 인권운동의 중심은 종교단체였는데 설혹 종교가 중심이 아니라 해도 종교의 외피를 뒤집어쓰지 않으면 버텨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이 시기 인권운동을 담당했던 종교단체들은 종교단체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문제는 종교가 근본에 있어서 보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회귀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물론 민중신학이나 그런쪽에서 항의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쪽에서도 종교의 보수성을 개혁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니 종교의 대세가 보수적이라는 것이죠.

인권운동은 운동이 추상적으로 흐르지 않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세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가지고 있어 동구, 소련이 무너져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구체적인 일에 매몰되다 보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 또한 많습니다.

또 종교의 매카니즘이 가진 또 하나의 약점을 지적하자면 사람들에게 인권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지요. 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눈을 뜨고 있더라도 주로 시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 즉 신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종교인권운동의 재원은 교단이나 교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교단과 교인의 방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종교 인권운동의 결정적 한계라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두려워하는 종교적인 심성을 갖는 것은 인권운동가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홍운: 궁극적으로 '인권'의 보장은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자각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인권을 지키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로서 '인권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나라의 움직임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서준식: 지금까지 인권교육을 주장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권의 정의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저는 학교의 도덕이나 국민윤리를 '인권'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인권을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유치원 때부터 우리가 흔히 쓰는 병신, 검둥이 등의 말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시청각적으로 반차별 감성을 길러줘야 합니다. 국민학교, 중학교를 거쳐 사실상 학교 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고등학생 정도면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동안 도덕이나 윤리가 통치도구에 이용돼 온 것에 비해 인권은 도덕이나 윤리의 모든 부분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홍운: 서준식 선생님은 자신이 대표적인 인권유린의 사례일 뿐 아니라 인권운동의 산증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을 열게 된 동기와 만약 사랑방이 기존 인권운동의 한계와 문제점을 넘어 새로운 인권운동을 주창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서준식: 대표적 인권유린의 사례라고 하는데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이름도 없이 어둠 속에서 매장된 사람들을 생각할 때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라는 평가가 낮 뜨겁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나간다면 뭔가 구체적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인권운동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인권운동은 종교단체의 운동이고 목사나 학자 운동으로 알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밖에 나와서는 장기수 문제를 알리고 민가협에서 활동하면서 인권운동에 재미를 붙이게 됐습니다.

인권운동은 운동이 추상적으로 흐르지 않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세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가지고 있어 동구, 소련이 무너져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구체적인 일에 매몰되다 보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 또한 많습니다.

전민련에서 활동할 당시부터 인권운동연합에 대한 구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각 단체가 연합을 꾸리기 위한 재정부담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대신하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을 꾸리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국제화를 주장하면 할수록 외국과의 관계가 더 많아져 조약이나 협약의 내용이 국내에 미치게 될 영향 또한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권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국경이 없는 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은 새로운 정보를 모으고 알리는 일 그리고 외국의 다른 인권단체들과 국제연대를 통해 한국 인권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홍운: 오랜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囍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 -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박원순(변호사)

1994

1. 서론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인권운동은 활기와 관심을 잃었다. 그동안 인권운동에 종사해오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손을 놓거나 보다 인기있는 환경운동, 시민운동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하에서 인권문제는 더이상 활발한 동력을 제공하는 운동의 이슈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인권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인권을 감시하고 담당하던 부서들이 아시아워치 등 우수한 세계인권단체에서 해체되고 있으며, 한국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활동을 벌이던 적지 않은 활동가들이 한국을 떠나 필리핀, 버마, 중국등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한국의 인권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던 구원의 손길이 끊어졌지 오래이며 세계각지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 등에서도 한국은 아예 빠지거나 대단히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다. 작년도 아시아워치 세계인권보고서에는 일본의 인권에 대한 논평부문은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새 정부의 인권개선정책에 맞물려 있다. 군부독재의 연장선상에 있던 노태우 정권하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던 권력의 남용이 상당부분 시정되기 시작하면서 인권문제가 언론과 사회의 관심사로부터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정부에 의한 인권의 개선과 인권운동의 활성화는 사실상 반비례 관계에 있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인권수준의 향상이 인권운동의 활력을 삭감시키면서 역설적으로 인권운동의 어려운 여건을 가져온 셈이다.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개선되어 인권운동이 약화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불가피하고도 바람직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적어도 정부는 더이상 한국에서 인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은 지났다고 거듭 천명해왔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세계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여기 우리들이 세계인권회의에 모인 자리에서 나는 한국에서 인권이 드디어 성숙에 이르렀다고 알릴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진실,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가 마침내 승리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서 여러분 앞에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숙한' 인권, '승리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가. 따지고 보면 그것은 턱없는 망언이며 과장이다. 이미 수백년을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사법제도의 개혁과 인권사건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이제 민주주의적 문턱, 인권의 초보적 단계에 들어선 우리가 그토록 자만할 사정은 아닌 것이다. 그 자만할 수 없는 사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권운동이 결코 쇠퇴하고 사라질 수 없는, 그리고 사라져서는 안될 이유는 무엇인가?

2. '문민정부'의 이름에 값하지 못하는 인권상황

오늘 이 땅에 마치 모든 인권문제가 사라지고 자유와 정의가 보장된 유토피아적 사회가 다 된 것인양 일반국민들이 인식하게 된 배경에는 이 정부의 과대 홍보정책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언론의 몰인권적인 태도가 자리잡고 있다. 이들에 의해 이제 인권문제를 들먹이는 것이 마치 시 대착오적인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정부하에서 인권의 어느 측면이 개선되고 발전하였는가. 민가협은 여전히 300명이 넘는 양심수가 갇혀 있고 4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장기수가 있는 나라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의 감옥은 전향의 강요와 비민주적인 억압으로 가득찬 행형제로 움직여지고 있다. 아직도 안기부에서 성고문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고발이 있으며, 해 한권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다. 구시대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던 수백명의 유가족들이 아직도 진실을 갈구하고 있고 고문의 희생자들의 절규가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최근 한국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려 방한했던 국제 엠네스티 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 것은 대단히 시사적이다.

“문민정부 출범 후 개혁조치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왔으나 인권침해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보법의 존속, 안기부의 불법 체포 등의 만행, 구정권하의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노력의 부족 등이 인권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그토록 많은 양심수를 낳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던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들이 끄덕하지 않고 남아 있다. 수사시 변호인의 입회권,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등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초적 제도를 도입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 원한이 사무쳤던 안기부와 경찰의 대공부서의 실질적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사명을 저버렸던 사법부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인권남용에 앞장섰던 검찰의 책임있는 법관과 검사들이 그에 대하여 용징과 면식받은 바 없다.

무엇이 개혁이고 개선인가. 인권의 실질적 보장이 뿌리내릴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착, 인권남용이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관행의 확립, 항상적인 인권단체와 국민의 감시체제 구성없이 개혁과 개선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같은 구체적인 성과는 없이 마치 모든 개혁이 이루어지고 인권문제는 사라진 것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더 큰 인권의 위기상황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 인권의 실질적 담보조건은 아니다. 어차피 인권은 한 개인의 문제로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땅, 이 한 밤, 단 한 명의 고문받는 형제가 있더라도 나머지 만인은 편히 잠잘 수 없다. 단 한 명의 인권,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 모두의 인권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문민정부'라는 이름 아래 무너지고 있는 인권은 한두 명에 그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또다시 우리 사회의 최대공약수이자 지난 시대의 교훈이었던 인권의 존중이라는 기본적 가치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과거 인권의 대량 유린을 가능하게 하였던 수 많은 법제와 기구, 관행과 인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언제 다시 그 희생자가 생겨날 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미 생겨나고 있는 사례들은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정당화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3. 인권운동의 새로운 전기

이와 같이 정부의 인권정책이 대단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인권단체와 사회운동단체들은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이미 본대로 변화된 경제속에서 인권이라는 이슈가 더이상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인권운동을 담당하고 이끌어갈 인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극적 상황과 관련하여 인권운동이 제자리를 찾고 우리 사회의 인간화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새로운 자질을 갖춘 인권운동가들이 배출되어야 한다. 종래의 인권운동은 엄밀히 말하면 정치적 운동의 한 요소와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인권의 남용과 악화는 결국 부당한 군부독재정권의 존재에 연유하였던 것이므로 이 정권의 타도야말로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권운동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인권운동과 정치운동의 경계가 제대로 서지 않았으며 전문적인 인권운동가가 배출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인권문제를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 보고, 연구, 고발하고 법제, 관행의 변화를 위한 대안마련의 역량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임무를 담당할 전문적인 인력양성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인권운동의 대중적인 방식을 개발해내야 한다. 종래의 인권운동은 권력기관이 무언가 '실수'를 저질러 주기를 기다려 그것을 문제삼고 성토하는 소극적인 방식에 매달려 왔다. 그러나 이제 어느 분야, 어느 인권이 문제인가는 직접 찾아나서 이를 대중과 언론에 널리 알리고 이를 움직여 진상조사운동, 국회를 통한 입법활동, 소송 등을 통한 문제제기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사법부 감시운동도 조직되어야 한다. 이제 '주먹'보다는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중을 설득하고 촉발할 수 있는 광범하고도 다양한 방식들이 동원되어야 한다.

셋째, 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종래 국가권력기관에서 빚어지는 가혹행위, 그것도 시국사건에 인권운동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인권이 유린당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받는 곳은 거기에만 있지 않다. 이름없는 서민들의 고통도 외면할 수 없다. 여성들의 인권, 장애자의 권리,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등이 모두 함께 중시되어야 한다.

넷째, 인권활동의 국제적인 장에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인권운동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성에 기초한것으로서 국제적, 지역적 협력없이 전개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인권침해로 고통당할 때 전 세계가 보여준 관심과 지원을 값어치 있는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국제인권법은 구경하고 방관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법질서로 전환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은 우리 정부의 비준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 사법부가 재판의 준거로 상용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이와 같은 규약에 근거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 활발한 제소를 함으로서 우리의 법체제로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자세와 인식이다. 과거의 독재정권 하에서는 이런 인권문제라도 정당한 조사와 해결을 차단, 비호하려는 정치권력에 의해 정치적 성격을 띠고 곧바로 큰 관심과 영향을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었다. 그러나 권위주의의 청산과 함께 인권문제는 인권문제 그 자체로서 남게 되고 그파장이 정치권에까지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작은 인권의 이슈라도 꾸준히 제기하고 언론과 사회의 양심에 호소하는 지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문제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인 한 간과할 수 없다. 작은 것이 소중한 위대한 것이다.

4. 자유는 영원한 감시의 대가

-투쟁없는 인권없고 희생없는 자유없다-

오늘날 김영삼 정부하에서 고창되고 있는 개혁과 문민이라는 구호에 의하여 인권문제는 정부 자신에 의해 확고히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권력과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인권을 완벽히 보장하고 실현하는 예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국민 스스로에 의한 헌신과 투쟁없이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입증하는 바이다. 우리가 오늘날 이만큼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도 지난 시대, 그 암흑한 동토의 계절에 신명을 바쳐 투쟁하고 노고를 바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인고의 세월이 끝나고 정부가 개혁을 통해 인권을 보장해주는 시대가 되었다는 인식만큼 위험천만한 사고방식도 없다. 우리가 누리는 이만큼의 자유와 권리도 그것을 끝없이 지켜내고 신장시키고자 하는 불침번의 노고가 없다면 그것마저도 안전하지 못하다. 자유는 영원한 감시의 대가(Liberty is the price eternal vigilance)라는 표어는 미국의 가장 큰 인권단체인 미국 인권옹호연맹(American Civil Liberty Union)의 정문앞에 써 붙여 있는 구호이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인권운동을 향한 장정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에서 신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주민 생활에 밀착된 사법, 주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사법, 관료주의적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는 사법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민의 재판참여를 보장하는 참심제나 배심제와 같은 제도도 최하급심법원의 법관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와 유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도입 문제가 장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민’정권 1년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과제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I. 인권으로 본 ‘문민’ 1년

1. 무너진 기대: 인권정책 없는 ‘문민’

문민정부가 출범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권상황 개선에 큰 기대를 걸었다. 오랜 군사독재의 횡포 속에서 움크리고 살아 온 우리 국민들에게 ‘문민’이라는 언어의 마술은 적어도 초기에는 상당한 효능을 발휘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허망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3·6 대사면’, ‘위대한 대화합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는 이 석방조치는 그러나 취으로 민망스러운 것이었다. 석방된 시국·공안사범 144명은 전체 양심수의 27%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 대부분이 사면되지 않았어도 만기출소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분단과 냉전의 희생양인 죄의수들은 89명 중 6명 밖에 석방되지 않았다. 석방 여부에 비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던 강기훈씨, 윤석양씨 등도 석방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감옥에 남아 있다.

‘3·6 대사면’은 이른바 ‘문민’시대 인권의 앞날을 정확하게 예고해 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문민’정부가 인권상황 개선의지

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이후 현재까지의 1년 동안 이것은 거듭되는 실망 속에서 확인되고 또 확인되면서 이제 '문민'정부의 인권정책 부재는 거의 분명해졌다.

'문민'정부가 만일 인권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다음과 같은 정책이 가시화 되어야 할 것이다.

- 첫째, 과거에 발생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인권문제의 청산.
 - 둘째, 여러 가지 부제도의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르는 정비.
 - 셋째,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내지 개몽이다.
- '문민'정부는 이 어느 것 하나에도 손을 대지 않고 있으며 관심도 전혀 없어 보인다.

2. 외면되는 과거 인권문제의 청산

오랜 군사독재통치는 우리에게 너무도 큰 고통을 강요했고 많은 것을 빼앗아갔다. 이 과거의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군사독재시절의 인권문제는 동시에 분명히 현재의 인권문제인 것이다.

재판도 없이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안감호소에서 빼앗긴 백수십명의 장기수들, 70년대 이후 무지막지한 고문으로 정책적으로 대량생산된 '조작 간첩'들은 여전히 피눈물 삼키며 죽은 듯 숨죽여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삼청교육'의 악몽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육체와 정신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많은 고문 피해자들은 오늘날도 재산을 탕진해가면서 계속 정신병원에 들락거리거나 정신병을 앓은 채 방치되고 있다. 심증판구 권력의 피문은 손이 이등 속에서 지질렀을 42건의 '의문사'사건은 아직 단 한건도 정부차원에서 조사되지 않고 있다.

1517명의 해직교사 대부분이 최근 복직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교조의 맹렬한 노력과 '전교조 탈퇴'라는 다소 굴욕적인 양보 끝에 이루어진 결과로서 '문민'정부의 인권상황 개선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 없는 일일 것이다. 약 1200명에 이르는 해직 인문인, 무려 5200여명에 이르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내지 명예회복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6 대사면'에서 석방되지 않았던 200여명의 양심수들은 그 극히 일부가 석가 탄신일 혹은 연말에 인색하기 짝이 없는 가석방 조치로 풀려난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감옥에 남아 있으며, '문민'정부 1년만에 만들어진 222명(민가협 통계)의 양심수가 새롭게 그 자리를 메꾸었다.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인권문제의 청산은 "어둠의 한 시절을 종결" 지을 것을 표방한 '문민'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분명하다. 그러나 적어도 '문민' 출범 후 1년이 되는 지금까지 이런 노력은 전혀 없다. 갖가지 인권범죄의 책임자 처벌은 커녕 사과 한마디 없었으며 진상조사에 착수할 조짐마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끔찍한 권력범죄들을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켜 준 '정치판사'들은 오늘도 눈을 시피렇게 뜨고 있다. '문민'정부는 끝내 이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문민'과 '군사'의 진정한 단절점(斷絶點)은 바로 '시인(屍認)'에 있다. 즉 과거에 군사독재정권이 저지른 악행을 '시인'할 수 있는 '문민'만이 군사독재 체제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문민'의 이름에 걸맞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태(胎)를 빌어서 출생한 김영삼 정권은 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을 한 까닭에 직장에서 내몰렸음을 '시인'하는,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많은 '좌익분자'들이 재판도 없이 십수년동안이나 구금당한 사실이 인권침해였음을 '시인'하지 않으며, '간첩'이 70년대 초 이후로 정책적으로 대량생산되었음을 '시인'하지 않는다. 33세 나이에 여섯번이나 정신병원을 드나든 문국진씨의 고통스러운 정신질환이 80년과 86년에 그가 경찰에서 받은 처참한 고문에 기인하는 것임을 '시인'하지 않으며, 많은 '의문사'가 권력의 테러에 기인하는 것임을 '시인'하지 않는다. 물론 '정치판사'의 존재도 '시인'하지 않는다.

과거의 권력에 의한 인권범죄를 청산하는 문제에서 김영삼적 '문민'과 과거의 '군사' 사이에 단절은 없다. 즉 '문민'적 인권상황과 '군사독재'적 인권상황 사이에 단절은 없는 것이다.

3. '문민'시대에도 여전히 정권에 봉사하는 억압법제

'문민'이란 이름에 걸맞은 정부, 그러니까 인권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무엇보다도 힘 있게 추진해야 할 일은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폐하고 국민들에게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도를 확립하는 일이다. 특히 '문민'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를 지향하는 정부라면 이들 법률과 제도는 적어도 국제적 인권기준에 맞추어 정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이러한 법제도 정비 의지는 1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가시화되어 있지 않다. '문민'정부는 지금 군사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악법이 안겨주는 이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며 따라서 당연히 이를 폐하기 위한 노력을 사보타지하고 있다.

인권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는 만사 꺾혀놓고 폐해야 할 많은 법률과 제도가 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불법 입법기구에서 만들어진 '법률'

우선 과거 군사쿠데타가 일어날 때 마다 정권 탈취자들에 의해 구성된 불법 입법기관이 대량생산해 낸 이른바 '법률'들이 있다. 1467건(전체 법률의 32%)에 이르는 이런 '법률'의 상당수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집권세력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민'정부는 이들 사이버 법률의 정비작업에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있다.

(2)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사건은 '문민' 1년에도 숨가쁘게 꼬리를 물고 일어났으며 '문민'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인권탄압법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최근의 민가협 통계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출범 1년만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자는 모두 139명에 이르고 이는 같은 기간의 전체 시국·공안사건 구속자 222명 중 62.4%에 해당한다(한겨레신문 1994. 3. 9). 이 법이 우리나라에서 인권 실현에 얼마나 큰 장벽이 되어 있는지는 전체 시국·공안 사범 중 국가보안법 관련 양심수가 차지하는 비율 추이를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된다(1994년 2월 <민가협>통계).

1990년 6월	- 32%(398명)
1991년 6월	- 41%(537명)
1992년 5월	- 47%(455명)
1993년 2월	- 59.1%(399명)
1993년 9월	- 70.4%(253명)
1994년 2월	- 83.3%(220명)

또한 국가보안법사건 불기소율 통계는 '문민시대'가 얼마나 국가보안법의 그물에서 빠져나가기 어려운 시대인가를 보여준다(1993년 가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1990년	- 27.5%
1991년	- 33.0%
1992년	- 16.5%
1993년	- 11.3%

국가보안법이 반공이데올로기를 등에 업고 '정권안보'를 위한 인권유린의 도구로 악용되어 왔음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월 31일에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표현·집회·여행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비난했고, 이번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말하자면 국가보안법에 바야흐로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민'정권은 출범 당시부터 공식 입장으로 굳힌 국가보안법 존속 방침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으며, 군사정권과 똑같은 완고함으로 국가보안법 폐기를 거부하고 있다. '문민'시대에 들어 국가보안법 폐폐 논의는 완전히 죽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노동관계법

국가보안법과 함께 반드시 폐되어야 할 법률은 노동관계법이다.

2

28

그러나 II.O에서 한국정부에 폐지할 것을 권고한 '제3차 개입금지',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금지' 등 시급한 부분마저 개정될 전망이 없다.

노동부 산하에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가 설치되어 개정시안을 마련 했지만 이 시안은 집권세력 내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 정국회 상정이 포기된 채 지금까지도 표류하고 있다. 우르콰이 라운드 타결 직후 "국가경쟁력 강화"의 최우선 과제로 노사안정을 위한 임금 억제라는 정책 방향이 더욱 분명해지자 억압법으로서의 노동법제가 개정될 가능성은 다시 멀어졌다. 더구나 최근에는 '생리휴가 무급화' 결정과 함께 '근로자 파견법'이라는 신종 노동악법의 제정 움직임마저 노골화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차피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 아니, 경쟁력 강화가 '신화'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법 '개정'은 곧 '개악'을 의미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문민'정부의 노동정책은 분명히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에서 시행된 억압적 노동정책으로 복귀하고 있다.

(4) 사법제도 개혁

'사법제도 발전위원회'가 법조계를 망라하여 만들어진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이라 해도, 거기서 진행된 논의를 살펴볼 때 우리는 역시 완강한 벽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치판사' 척결문제가 호지부지 되어버린 조건에서 사법제도 개선 논의는 어차피 맥빠진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에서 무엇을 논의하건 여전히 이 순간에도 공안경찰은 영장 없이 피의자를 납치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수사과정에 변호사가 입회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수사관이 변호인 면회를 방해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영장실질심사제도나 불구속제판관칙이 강력한 공안경찰과 '정치판사'가 의존하는 조건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심스러우며, 오히려 상고허가제등 사법개혁에 역행되는 신설 제도가 더 맹위를 떨칠 가능성마저 배제할

29

수 있다.

지나간 1년동안 사법부의 몇몇 판결은 인권존중이라는 관점에서 팔목할 만한 진보를 보였다. 105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해고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필리핀 노동자 2명에게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인정했다. 국가보안법 사건 때마다 논란거리가 되어 온 '국가기밀'의 개념에 대해서도 과거 판례와는 달리 황석영, 김삼석재판에서 그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판결이 나왔으며 최근에는 대법원이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지역 전교조 해직교사 10명에게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이런 판결들은 어쨌든 사법제도가 개선되어 나갈 것을 예시해 준다. 그러나 물론 사법제도의 개혁은 '문민'정부의 인권에 대한 배려에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부끄러움'을 아는 법조인들의 용기와 노력에 의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져나갈 것이다.

4. 언제까지 인권교육의 황무지인가?

'인권교육'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직도 대단히 생소한 말이다. 누구나 국가의 인권침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항목을 우선 알아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인권'을 배워야 한다. 인권의식은 결코 배우지 않고 직감이나 양식만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밀리는 유구한 봉건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거쳐, 그리고 특히 해방 후 오랜 독재의 시기에 우리는 '건방지지 말 것', '지유가 방중에 흐르기 쉬움', 그리고 '악법도 법'임을 골수에 박히도록 배워왔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군사문화와 반공이데올로기를 공기 마시듯이 몸에 익혀 왔으며 이를 명분으로 내세운 제멋대로의 인권유린에 무감각했다. '인권교육'이라는 말이 생소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군사독재시기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인권교육이란 눈곱만치도 없었고 반인권교육만이 기승을 부리고 판을 쳤던 것이다.

'인권'을 가르치는 것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특히 '문민'을 자

치하는 국가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인권상황의 근본적 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해야 할 이 인권교육이 '문민'정부의 정책 일정에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무데도 없다. 학생들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의 체계적인 인권교육, 공무원 특히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초보적인 인권교육, 그리고 UN 가입국으로서 또 인권에 관한 여러 다자간 조약의 가입국으로서 당연히 지게 되는 의무로서 해야 할, 인권에 관한 갖가지 UN 문서·조약들을 알기 쉽게 번역·해설함으로써 국민에게 홍보하는 일 등, '문민'정부가 손을 대려고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문민' 2기 내무부 장관인 최형우씨의 "사상범에게는 고문을 해도 괜찮다"는 발언에서, 총을 쏘며 시위를 진압하는 '선진국'을 부러워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에서, 아니 그 무엇보다도 출범 초기부터 강압적인 자세로 들이댄 '고통분담'이라는 논리 그 자체에서 우리는 애당초에 이 '문민'정권이 인권교육의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을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5. '문민시대'의 인권상황, 그 전망

'문민' 1년...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데 대해 누구나가 큰 이의 없이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개선에서 "팔목할만한" 향상이 있었다"는 관측은 착각일 가능성이 크다. 부분적으로는 '문민'과 '개혁'이라는 요란스러운 슬로건 공세로 인한 착각이고, 부분적으로는 전반적인 재야운동의 위축으로 말미암아 시국·공안사건의 절대량이 감소한 사실을 간과한 데서 오는 착각이다.

'문민'과 '개혁'의 빛은 바래어가고 언어의 마술은 점점 약발을 잃고 있다. 청와대와 제벌의 '관계 정상화', 'YS'와 '전·노'의 '대화해', 그리고 구속되었던 비리 인사들의 잇단 석방과 대통령의 농민시위 강경진압 지시 등 일련의 과정을 목격하면서 애초 '문민'의 꿈에 부풀었던 국민들은 만민에게 적용되는 정당하고 공평무사한 법과 제도에 대한 희망을 벌써 잃어가고 있다.

30

과거 박정희·전두환정권의 '개발독재'를 방불케 하는 '고통분담과 국가경쟁력 강화'론은 우리의 인권상황에 분명 먹구름을 던지고 있다.

즉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노동통제와 그로 말미암은 민생고. 그리고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예산의 동결·삭감은 필연적으로 민주화·자유화의 실질한 요구를 내놓을 것이며 이 요구를 압살하기 위하여 군사독재시절의 악법이 '문민'에게도 여전히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경찰·안기부 등 억압적 국가기구의 폭력은 제한적이거나 여전히 동원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잠시 고개를 숙였던 '정치판사'들이 다시 '사법부 개혁'에 코방키 끼게 될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사태이다.

기스르기 어려운 시대적 조류 때문에 인권상황에 부분적인 개선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민'하에서도 군사독재하 인

* 법무부에 의하면 1990년부터 1993년 8월까지 시국·공안사건(국가보안법, 집시법, 화염병 등,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선거법)통계는 아래와 같다.

연도	국가보안법	집시법	화염병등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선거법	총계
1990	731	943	384	1, 175	705		3, 938
1991	551	570	624	774	493		3, 012
1992	441	175	155	468	518	2, 258	3, 985
1993	115	53	58	93	558		877

(1993년 통계는 1월부터 8월까지)

* 노동조합법 위반사건의 구속율은 대체로 100명에 1명 꼴도 안되는 것을 감안할 때 주로 인권시비가 야기되는 것은 국가보안법, 집시법, 화염병, 노동쟁의조정법일 터이나 이 네가지 법령 위반사건은 '문민' 1년에 격감한 것을 알 수 있다.
* 적어도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우리의 판단으로는 사건 수치가 줄었을 뿐 아니라 사건다운 사건은 그리 많지 않았다. 즉 작년 여름쯤에는 마치 경찰청 각 대공분실이 마지못해 할당량이라도 채우려는 듯이 '견'도 되기 어려운 사건을 '구실로' 연행, 기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노태훈사건, 민중정치연합사건, 국제공산주의자당·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사건 등). '문민'정부 출범 후 1년동안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139명 중 재판결과를 마친 것은 70명이며 그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8명(12.5%)에 지나지 않는다.

권상황의 기초는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이제 고난의 시절이 지나고 가만히 있어도 '문민'이 알아서 과거를 청산해 주고 억압법제를 정비 해 주고 인권 향상을 위한 여리가져 배려를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확실히 어리석은 꿈일 따름이다.

II. '문민'시대의 인권운동

1. 변화된 상황, 변화되어야 할 인권운동

'문민'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난 지금 과거 1년의 사회적 변화를 돌아보고 평가하는 작업이 각계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변화된 상황에 운동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의 문제, 즉 '문민'시대의 '운동론'이라고 할만한 것은 그리 풍부하지 않은 듯하다. 이 사실은 '문민'과 '개혁' 슬로건의 위력 앞에서 "운동이 해매고 있다"는 우리나라 냉소 어린 목소리가 어느 정도는 사실임을 뒷받침해 준다.

변화된 상황 속에서 인권운동 역시 얼마나 큰 어려움에 봉착하여 해매고 있는지를 어느 논평은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인권운동은 활기와 관심을 잃었다. 그동안 인권운동에 종사해오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손을 놓거나 보다 인기 있는 환경운동, 시민운동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하에서 인권문제는 더 이상 활발한 동력을 제공하는 운동의 이슈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인권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인권을 감시하고 담당했던 부서들이 아시아 위치 등 우수한 세계인권단체에서 해체되고 있으며, 한국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활동을 벌이던 적지 않은 활동가들이 한국을 떠나 필리핀, 비마, 중국 등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한국의 인권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던 후원의 손길이 끊어진 지 오래이며 세계 각지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 등에서도 한국은 아예 빠지거나 대단히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다. 작년도 아시아 위치 세계인권보고서에는 일본의 인권부분에 대한 논평은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새 정부의 인권개선정책에 맞물려 있다. 군부독재의

31

인장신상에 있던 노태우 정권하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던 권력의 남용이 상당부분 시정되기 시작하면서 인권문제가 언론과 사회의 관심사로부터 사라지게 된 것이다. 정부에 의한 인권의 개선과 인권운동의 활성화는 사실상 반비례관계에 있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인권수준의 향상이 인권운동의 활력을 삭감시키면서 역설적으로 인권운동의 어려운 여건을 가져온 셈이다."

위 인용문 마지막 부분에 대하여 물론 필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이 글의 전반부에서 개진한 이유 때문이다. 즉 근본적으로 과거 군사정권과 단절하지 않은 김영삼 정권에는 인권운동을 잠재울 만한 '인권개선정책'은 없으며, 국민으로 하여금 '문민'과 '개혁'때문에 인권상황이 개선되었고 인권운동의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는 '즐거운 착각'을 갖게 할 쇼우맨십(showmanship)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쨌든 인권운동이 어려운 것은 틀림 없다. '문민'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어렵다기 보다, 벌써 수년 전부터 어렵다. 더 정확하게는 1990년 이른바 '3당 합당' 무렵부터 어려워졌을 것이다. "인권문제가 언론과 사회의 관심사로부터 사라지"기 시작한 것도 역시 그 무렵부터인 것이다. 거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 인권운동이 '유신·5공' 당시의 피비린내나는 반독재투쟁의 전통 속에 있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독재타도투쟁은 그 명분으로서 늘 '인권'을 앞세웠고 인권운동은 독재타도투쟁의 과정에서 대량생산되는 인권유린 덕분에 "빈창"했다. 말하자면 인권운동은 반독재운동, 민주화운동의 일부이자 그런 운동들과 '밀월'을 즐기는 관계에 있었던 셈이다. 당연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인권운동의 주된 품목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였고 그중에서도 특히 '양심수'의 영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뚜렷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흔히 독재와 반인권에 대한 대중적인 거대한 분노의 감성에 기대는 즉흥적 방법이었다.

이리가 양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예쁜 목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양이 되는 것은 아니듯이, 군복이 양복으로 바뀌고 독재가 '문민'의 가

* 박원순, 「반민주 반통일 악법 폐쇄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 강연」, 1993. 12. 2.

면을 쓴다고 해서 인권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가 양의 가죽을 뒤집어쓰는 것도 상황변화는 변화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 더 근본적으로는 세계적인 규모의 정치기류의 변화 속에서 치열했던 우리의 반독재투쟁과 사회운동이 침체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할래야 할 건덕지 자체가 감소되어가는 조건에서, '인권문제'=양심수문제 정도로 이미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버린 국민들, 신문기자들, 아니 심지어는 인권운동가들자신마저도 인권운동에 관심을 잃고 혹은 기사를 쓰지 않고 혹은 운동에 신명이 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양심수, 고문, '의문사', 경찰관·교도관의 폭력...,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의 손바닥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반독재투쟁의 전통은 분명 자랑스롭다. 그러나 진정한 인권운동이 어려운 이유는 인권운동이 그와 같은 반독재투쟁의 전통에, 그때의 정서에, 그때의 '품목'에 그리고 그때의 방법에 아직도 매달리고 있는 데서 오는 것일 터이다. 인권운동은 변해야 한다. 인권운동은 비약할 수 있으며 홀로 설 수 있다.

2. '문민' 1년 인권운동의 간략한 평가

인권운동이 전체적으로는 활기와 관심을 잃고 변화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도를 여전히 세우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지난 1년동안에 결코 무시하지 못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노력이 있었음을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인권운동의 '전통적' 방식이 진술을 짜기에 따라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효과적이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대표적 운동으로서 '윤금이 공대위'의 활기찬 활동과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의 활동, 그리고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전해투)의 활동을 들 수 있다.

주한미군에 의한 잔인한 살인사건이 우리 대중의 분노를 유발시켰다는 조건도 있지만 '윤금이 공대위'의 대중 동원을 위한 적절한 노력

32

은 두가지 열매 즉 살인범 케네스 마를을 우리 법정에서 유죄선고를 받게 했으며 '공대위'를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로 발전시키는 성과를 올림으로써 대중운동의 전범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양군모' 활동의 특징은 젊은이들의 정열과 규율 잡힌 조직력,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집중적이고도 잘 짜여진 로비이다. 조직적으로 각계에 파고든 그 끈질긴 로비는 역시 우리 인권운동사에 하나의 전범으로 남을 것이다. '전해투'의 활동성과는 그들이 처해 있는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10개월에 이르는 온갖 악조건 속에서 끈질기게 이어져 온 농성투쟁은 어떤 형태로든 그들에게 일정한 성과를 안겨줄 것이 예견된다.

한가지 테마를 가지고 꾸준히 물고 늘어지는 인권운동의 방식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운동풍토에서는 대단히 희귀하고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유신·5공'시대를 통하여 '간첩'이 대량으로 조작되었다는 주장은 이제 상당히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막막함과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일의 어려움 때문에 이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할 임무를 누구나가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작년 1년동안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조직의 거의 모든 힘을 기울여 왔다는 사실은 주목할 일이며, 특히 '천주교 인권위'가 '이장형사건', '강희철사건', '신기영사건'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철저히 조사·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운동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환영할 만하다. 또한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각고 끝에 세상에 내놓은 방대한 「유서사건 총자료집」은 '문민' 1년의 인권운동에서 하나의 기억할 만한 '사건'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시작, 부산, 광주, 인천으로 확산되어 이제는 척박한 우리의 법률구조제도의 선봉으로 정착되어가는 당직변호사제도, 인권교육에 인권운동 전반에 걸친 침체를 타개할 가능성을 찾은 '전국연합 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 사랑방'의 인권교육 기획, '노태환사건'에서 '인권운동 사랑방'과 일부 변호사들이 보여준 발빠르고 모범적인 대응, 팩시밀리나 컴퓨터를 조직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인

권운동의 지평을 열 가능성을 보여준 '인권하루소식'이나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인권문제 토론 및 정보 교환도 '문민' 1년에 인권운동을 풍부하게 했던 특기할 만한 운동들이다.

그러나 인권운동에서 '문민' 1년간 나타난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국제화와 자료 축적에 의한 전문화가 본격화할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외국 인권단체들과 늘 연락을 취하면서 대규모 국제회의에도 자주 참가한 국내 인권단체는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개 종교계통의 인권단체가 종교적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이거나 영어에 능통한 개인을(임시)대표로서 내세우는 방식의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니었고, 그나마 인권단체간의 국제적 연대나 유엔의 민주화를 의도하는 국제활동이라기 보다 한국 인권의 실상을 호소하거나 원조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6월에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국내 8개 인권단체가 공동으로 참가한 무렵부터 우리나라 인권운동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은 질적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이 분명하다. 그 때까지 거의 국제경험이 없었던 8개단체가 결성한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KONUCH)가 이 대회의 준비과정에서부터 외국의 인권운동가들에게 준 인상은 뚜렷했으며 빈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주도적으로 조직하는 등 이후의 한국인권운동의 국제연대를 위한 조건을 다지는 데에서 수행한 역할은 크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인권운동가들은 밀개만 느끼던 인권운동의 국제화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으며 그 성과가 '전국연합 인권위원회'의 동티모르(EAST TIMOR) 독립운동 지도자 초청(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민간 인권단체가 약소국의 독립과 인권회복을 위한 운동을 지원할 목적을 가지고 외국인을 초청한 최초의 사건일 것이다.), '인권운동 사랑방'의 유엔 인권위원회 실무자 연수 과정과 올 6월로 예정된 아르헨티나의 '5월광장 어머니 모임'회원 초청 기획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KONUCH는 빈대회 이후의 새로운 세계민간단체 네트워크 결성 작업에서도 훌륭히 제 몫을 다하고 이

33

제 그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

KONUCH와는 별도로 작년에 '한국 정선대문제 대책협의회'가 국제무대에서 했던 활약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중군위안부문제와 그 책임자 처벌문제는 바야흐로 유엔 무대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향해 노력해야 할 결코 만만치 않은 인권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적 인권보장제도의 적극적 활용, 공통의 인권현안을 가지고 외국인권단체와 강력한 연대세력 형성,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권관련 최신 정보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입수 등등 이런 일들이 '문민' 1년의 인권단체들의 노력의 결과 곧 우리의 손이 닿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자료의 축적·정리와 그 활용은 인권운동의 생명과도 같다. 우리나라는 인권자료센터 한군데 없는 인권의 후진국이다.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예타게 바라던 이 자료센터가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구축되고 있다.

'문민'정부 1년, 인권운동 전체로서 활기와 관심을 잃었음이 분명한 이 '문민' 1년에 그러나 인권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는 착실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어 왔다.

3. '문민'시대 인권운동의 나아갈 길

7·80년대 엄청난 탄압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온 우리의 인권운동은 90년대에 들어 전체 변혁운동의 침체와 궤를 같이 하면서 그 역동성을 상실하고 있다. 군사독재의 폭력 아래 온 국민이 인권문제에 절실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시기를 거쳐,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정치권력이 그 통치방식을 고도화·세련화하여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은 인권상황을 군복 대신 양복으로 감싸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문민'과 '개혁'의 슬로건으로 감싸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침체로부터 벗어나 다시 생명을 갖기 위하여 인권운동은 변해야 한다.

첫째로 인권운동은 시야와 활동영역을 넓혀야 한다.

국가권력의 정치적 박해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주요한 테마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온갖 종류의 인권문제를 끊임없이 생산해낸다. 장애인문제, 어린이문제, 여성문제, 특히 노동자나 빈민 등의 인권문제 즉 '사회권'의 영역을 인권운동가가 간여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풍조가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는(중요하기는 하나)인권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권감각은 절름발이가 될 것이고 대중으로부터 끝내 비림을 받을 것이다.

둘째로 인권운동은 착실하게 자료를 축적·정리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우리 인권운동은 자료에 대한 관심과 집착이 희박하다. 아니 자료를 호치부지 없애는 운동이다. 자료가 있어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 정리되지 않은 자료는 써먹을 수 없는 자료이고 죽은 자료이다. 사건이 터진 후에 자료를 구하러 다니는 인권운동은 망하기 딱 알맞은 운동이다. 빠르고 신속한 자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권운동은 언제까지나 아마추어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셋째로 인권운동은 이제 인권교육의 무궁한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

'문민'시대에는 인권교육이 인권운동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부도덕한 정권은 절대로 인권교육을 하지 않는다. 인권교육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이야기이다. 대중들의 인권은 몇몇 인권운동가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대중들 스스로의 인권의식이 지키는 것이다. 인권교육은 우리 인권운동에 많은 것을 줄 것이다.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고 우리에게 광범위한 인권 자원봉사집단을 줄 것이다. '문민'시대, 우리 인권운동에 동력과 활력을 주는 것은 인권교육을 받고 반쯤 전문가가 될 온갖 계층의 자원봉사 시민들이다. 우선 가까운 범위부터 시작하고 장차 유치원·국민학교부터 인권을 가르치도록 나아가서는 중·고등학교의 도덕과 우리 시간을 '인권'이라는 시간으로 바꾸도록 요구하는 일대 국민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인권은 배우지 않으면 결코 터득할 수 없다.

34

넷째로 인권운동은 지질을 갖춘 유능한 이론가·활동가를 급히 양성해내야 한다.

인권운동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반독재투쟁 내지 사회운동과 '밀월을 즐기는' 관계에 있던 탓으로 우리나라 인권운동 활동가들은 이른바 '학생 운동권' 출신이다. 정치의식을 갖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나 이들에게는 대체로 전문성보다 정치성에 기우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인권운동이 "목소리만 높고 알맹이는 빈약"한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적어도 한가지 자신의 평생 전문분야를 가지고 그 분야에 관한 한 높은 식견, 관계 법규에 대한 해박한 지식, 조사능력, 대안 제시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인권운동가는 앞으로 교육을 받은 헌신적인 젊은 자원봉사자 속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인권운동은 지금 이러한 인력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로 인권운동은 국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인권의 보편성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오늘날, 국내 인권문제는 국제인권문제로 국제인권문제는 국내인권문제는 양상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는 국내문제에도 효과적으로 그리고 옹기 대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탈냉전시대로 돌입한 이후 급속도로 APEC, UR, G(green)R, T(technology)R 등으로 표현되는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지배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우리 현실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새로운 세계지배질서 속에서 '국제화'를 향한다는 '문민'정부가 '국제화'를 외치면 외칠수록 우리 또한 '국제화'를 향한 강력한 인권운동으로 성장할 필요를 절감한다. 즉 국제무대에서 자기 나라 정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다른 나라의 인권단체들과 연대하면서 강대국 중심의 세계지배질서를 조금씩 민주화·인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인권운동은 갖추어야 한다.

토론

오완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I. 도입

'인권'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될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존중되어야 할 인간 보편의 가치이다. 그러나 인간 보편의 가치인 인권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제한되고 침해되고 있다. 인권침해로부터 인간 보편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인권운동은 세계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규모와 양상, 영역은 다양하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흐른 지금, 한국에서는 여전히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침해를 시정하고 예방하기 위한 인권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인권운동은 변화한 한국사회에서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인권침해에 신속히 대처하고,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에는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인권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II. 인권과 한국사회

인권이란 인간 보편의 가치이며 인류 모두가 책임져야 할 가치이다. 즉 인권이란 개인과 사회 그리고 정부와 민족, 세계가 함께 책임져야

35

수민족문제라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일본 등에서의 인권문제는 소수인종차별문제라 하겠다.

한 국가내에서의 전통적 관습과 문화는 인권침해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성문제, 사형제도, 장애인문제, 어린이 문제 등이 이러한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인권문제는 이상의 3가지 요인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혼합되어 발생한다. 한국사회의 인권문제 역시 위의 3가지 범주에 따라 분석하여 봄으로써,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① 정치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인권문제

한국은 2차대전 후 독립한 신생국가이다. 해방 후 좌우익의 극심한 대립으로 남북은 분단되었으며 남한에서는 우익독재정권이 들어섰다. 그후 6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 군사독재정권이 집권하여 왔다. 이러한 독재정권들은 정부의 반대자들을 대부분 좌익으로 몰았으며,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국민을 압제하였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구금되었다.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여행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으며 그러한 침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② 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인권문제

7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과정에서 극심한 경제적 불균등이 초래되었다. 이 결과 소외된 계층들의 요구가 분출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노동문제, 사회보장문제, 교육문제, 외국인 노동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③ 사회적·문화적·인종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인권문제

한국은 근세기동안 봉건왕조시대, 식민지시대, 독재정권시대를 거쳐왔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한국내 인권문제 발생의 가장 주요한 사회적 토대가 되고 있다. 특히 유교전통은 인권의식의 발전에 중요한 장애가 되고 있다. 여성문제, 가정문제, 교원노조문제 등이 이러한 사회적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인종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인권문제는 일부 미군과의 갈등 및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들 수 있겠다.

한국사회에서 일반 국민의 인권의식은 아직 초보적 단계이다. 일반

36

할 가치이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은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은연중에 인권침해는 일어나고 있으며, 한 개인이 자신도 모르게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인권침해의 행위자를 정부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 범주는 훨씬 넓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의 신인민군, 페루의 빛나는 길, 북아일랜드의 IRA 등과 같은 비정부집단(Non-Governmental Entity)들도 주요한 인권침해의 행위자로 볼 수 있다. 한 사회내에서 작은 집단들과 개인도 인권침해의 행위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인권침해는 여러가지 다양하고도 복잡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들은, 발생 요인별로 크게 다음의 몇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① 정치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인권문제

2차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들에서, 인권침해의 대부분은 정치적 요인으로 발생되고 있다. 주로 정부와 반대세력간의 좌우익 갈등 속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남미와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신생국가들 대부분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② 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인권문제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각한 경제적 불균등을 이유로 노동문제, 교육문제, 의료문제, 사회보장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극심한 가난과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규모의 난민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지로 밀려드는 난민문제와 세계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문제, 의료문제, 교육문제, 사회보장문제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사회적·문화적·인종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인권문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 종교, 피부색, 언어 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차이로 인해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간의 심각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그리하여 소수민족문제, 소수인종문제, 종교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동의 회교국가들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아체지역, 티벳, 이스라엘 점령지역, 스리랑카, 영국의 북아일랜드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소

국민에게 '인권'이란 생소한 용어이다. 인권의 개념은 정부뿐만 아니라 인권단체, 언론, 일반국민에게 상이하게 해석되고 있다. 쉽게 '인권'이란 말이 사용되며, 때때로 '인권'은 아주 어려운 문제로 이해된다. 한국 국민은 세계인권선언이 몇 조로 구성되어 있는지, 세계인권선언일이 언제인지, 국제인권관련규약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이 왜 제정되었으며 한국정부가 어느 조약에 가입하였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또한 일반국민들은 인권이란 용어를 경의시하며 배척한다. 한국국민은 '인권'이란 말이 정부반대자들이나, 극렬운동 세력들, 간혹 식량의 정부나 단체들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은 어린이에게 권리가 있는지, 교사가 학생을 때릴 수 있는지, 대학의 식당이 왜 교수용과 학생용으로 나누어져 있는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사회이다.

III. 문민정부하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

일 년 전인 1993년 2월 25일, 약 30년만에 민간인 출신인 김영삼씨가 한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취임연설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신한국는 더욱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가 될 것이다. 정의가 이 땅에서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였다.

1993년 6월 비엔나 유엔 세계인권대회에서 한승주 외무부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세계인권대회에 참석한 이 자리에서 나는 한국에서 드디어 인권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어리분께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나는 자국에서 진실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가 마침내 승리하였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한 민족과 한 국민을 대표하여 여러분 앞에서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약속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내외적인 비판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3월 9일 발표된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의 한국특별보고서는 '한국에서 본질적으로 인권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한국에는 약 80여명의 양심수와 약 280여명의 정치적 수인(囚人)이 존재하며, 고문과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불공정한 사법 절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정부도 국가보안법이 인권침해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민가협이 발표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출범 후 구속된 정치적 수인 222명중 62.6%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금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 25명의 장기 정치적 수인들과 노태훈씨, 김삼석씨, 김은주씨, 이건희씨 등 많은 사람들이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 정권하에서의 고문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인권침해를 자행한 사람들 역시 처벌되지 않고 있다.

문민정부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침해유형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연행 및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영장없이 집행되는 체포 및 임의동행, 밀실수사, 가혹행위, 가족 및 변호인 접견제한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권침해는 '자백'을 주요한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법관행과 수사의 비과학성에 기인하고 있다.

② 구금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현재 한국내 수인들은 수감자처우에 관한 유엔최소기본규정에 훨씬 미달되는 조건하에 구금되어 있으며, 미결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결수로 인정되고, 교도당국에 의한 가혹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외부와의 서신연락 제한, 도서반입 제한, 접견 제한 등도 발생하고 있다.

③ 법률의 문제

국가보안법, 노동쟁의 조정법상 제3자개입금지조항, 사회보호법, 전향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장관령, 보안감찰법 등이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많은 양심수들을 구금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④ 과거정권하에서 자행되었던 인권침해에 대한 재조사

약 25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적 수인들에 대한 재조사를 하지 않고

37

있다. 이들 대부분이 이전 정권하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그리고 불공정한 재판과정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재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⑤ 국제인권규준에 가입보류

93년내에 유엔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93년 6월 유엔 세계인권대회 한국대표연설에서 한승주 외무부장은 공개적으로 이 조약에 가입하겠다고 천명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⑥ 인권희생자에 대한 배상조치의 부족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이 되지 않고 있다. 이전 정권하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희생자들에게 적절한 정신적·물질적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⑦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조사할 독립적 기구의 부재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경우 완전하고도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할 기구가 신설되지 않고 있다. 고문과 가혹행위와 같은 인권침해는 대개 비밀스런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그 증거를 찾기 힘들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호소가 있는 경우 대개는 정부내의 같은 수사기관이 이러한 호소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조사체계는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 인권침해를 호소할 때 이를 조사할 독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인권침해 조사위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구는 신설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들에 대한 인권침해 외에도 교육문제, 여성문제, 장애자문제, 의료문제, 노동문제, 사회보장문제, 어린이 문제, 가정문제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에 관한 인권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IV. 한국인권운동단체들의 현황

한국의 인권운동은 약 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70년대와 80

년대를 거치면서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발생한 인권문제들에 대해 훌륭히 대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인권운동은 변화하는 국제사회와 한국사회 속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효과적인 인권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한국인권운동단체들의 현재적 상황을 먼저 분석해 보고자 한다.

① 대중운동을 지향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인권운동단체들은 소수 명망가와 활동가들 중심으로 결성되어 있으며 단체의 위상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무실 중심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전국적인 조직망을 잘 갖추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 몇몇 특정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운동을 지향하고 있지 못하다.

② 명확한 수입사항을 갖고 있지 못하다.

각 인권단체들은 현재의 자기역량을 고려하여 수입사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각 단체가 설정하고 있는 광범위한 여러 인권영역들은 인권운동의 비전문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③ 명확한 활동원칙을 갖고 있지 못하다.

수입사항에 부합하는 인권침해 조사와 인권보호활동, 기금모금 등 자기단체의 활동원칙과 활동방식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며, 전문적이고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운동단체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활동의 연속성, 객관성 그리고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④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및 조직운영인척이 다소 길어지고 있다.

수입사항에 부합하는 정책의 수립과 1년의 사업을 평가·계획하는 총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들,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 자원봉사자들과 일반회원들간의 유기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권한과 임무가 명확히 구별되어 있지 않다.

자원봉사자와 실무자간의 구별이 불분명하며 또한 실무자들에게 안

38

정적인 임금과 노동권리 그리고 사회보장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회원의 가입 및 탈퇴, 회원의 의무와 역할, 회원들의 일상활동 등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로 인해 실무자와 자원봉사자 중심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⑤ 정치운동의 성격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인권운동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인권운동단체들은 특정 정치세력 및 정치이념과 독립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대중적 지지와 단체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특정 집단이나 세력과도 공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치운동의 성격이 일부 존재함으로 인해 단체의 인기에 영향되는 사업들로 활동방향이 편중되는 경향이 간혹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인사들이 정치적·사회적 입신을 목적으로 인권운동에 관심을 보이거나 가입하는 경향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⑥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인권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은 인권활동을 위한 제반 경비, 실무자의 임금, 기타 운영경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실무자들에게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기타 인권활동을 위한 제반 경비 및 운영비도 잘 마련되지 않고 있다.

재정은 주로 회원들의 회비, 상부단체의 지원 그리고 일부 인사들의 기부금 등으로 유지되고 있다. 재정마련을 위한 특정부서가 부재하며 대중적 모금방법이나, 활동원칙에 부합하는 수익사업들도 개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재정마련사업이 인권운동을 위한 중요한 한 분야라는 인식도 제기되지 않고 있다.

⑦ 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급변하는 국내외 인권상황에 조용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인권단체들과 많은 인권운동가들의 장기적 활동전망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일상적인 활동에 매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⑧ 국제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이해와 활동이 부족하다. 이것은 보편성에 근거한 폭넓은 인권운동으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

으며 한국인권운동이 담당하여야 할 국제적 역할을 제한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들에 대한 이해와 인내는 상당히 발전하였으나, 국제적 인권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관심과 활동은 개발되지 않고 있다.

⑨ 예방적 차원의 인권활동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의 인권운동은 인권침해가 발생한 후 대처하는 활동이 중심이었다. 향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고양하는 활동은 미비한 상태이다.

V. 문민시대 인권운동의 과제

한국인권운동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요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현재의 인권침해에 대처하고 새로운 인권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국인권운동은 새로이 한국과 세계 속에서 인간본연의 가치인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다음에서 인권운동단체들의 과제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① 최우선적 과제로 위에서 기술한 한국인권단체들의 문제들을 과감히 일소하여야 한다. 각 인권단체들은 대중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다양한 계층의 일반 국민이 지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권단체를 개방하여야 한다. 일반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일반적인 인권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② 명확한 수입사항을 설정하여 인권활동의 전문영역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확보된 자기단체의 전문영역에 대한 활동에 기초하여 국내 인권단체들간의 연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호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조직운영원칙 속에서 정치적 색채와 권위주의를 일소하고 장기적 전망 속에서 인권운동의 비전을 세우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③ 예방적 차원의 인권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특히 인권교육사업

을 전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적 전망 속에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그룹 인권교육자료와 인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먼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④ 국제인권운동의 흐름에 조응하면서 국제연대사업과 국제인권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특히 국제연대와 국제적 인권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정확한 연대프로그램과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들을 국내외 인권활동의 실제적 경험으로 축적하여야 한다.

⑤ 재정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중에 근거한 기금조성방법을 개발하고 운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을 모으는데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각 인권단체들은 합리적인 재정운영방법과 재정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상의 과제와 함께 현재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침해들을 시정해 나아가는 운동을 전개 하여야 한다.

국제인권규준에 미달되는 인권관련법률의 개정운동, 특히 국가보안법의 문제조항을 개정하는 운동, 국제인권관련조약에의 가입 촉구운동,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하는 운동, 인권침해 조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구의 설립을 촉구하는 운동, 양심수의 석방과 장기 정치적 수인들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운동, 여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운동, 노동권리가 보장되게 하는 운동, 어린이 권리 보장을 위한 운동등을 전개 하여야 할 것이다.

인권운동은 길고도 지루한 운동이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현재 한국에서 인권운동을 담당하는 인권운동가들과 단체들의 헌신과 노력은 처음에는 비록 미약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39

토론

이 승 호

충북대 교수, 형사법

I. 김영삼 정부 1년간의 인권정책과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김영삼 정부는 스스로를 '문민정부'라 지칭했고 그럼으로써 과거 '군사정부'와의 구별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여론의 상당한 호응을 얻었으며, 호응은 당연히 기대로 연결되었다. 즉, 뿌리가 '군사'와는 다른 '문민'이니 나라의 운명도 마땅히 그럴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인권정책과 인권상황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분명 있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러한 기대는 상당 부분 무산되었다. 그 동안 '문민정부'는 새로운 문민식 통치기술로 세를 물고 상황을 타개하는 일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군사'에서 '문민'으로 돌리는 일에는 실패하였다. 사정은 인권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발표자의 발표대로 '문민정부'는 과거의 인권문제를 공식적으로 재규정짓고 청산하는 문제도 외면하였으며, 억압적인 법제를 정비하는 작업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나아가 정치형사법의 실행과 관련해서는 과거 '군사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숫자의 새로운 양심수를 문민정부 스스로 생산하였다. 사정이 이렇진대 '문민정부'의 '문민화'의지에 회의가 드는 것은 당연하다. 확실히 지금의 김영삼 정부가 갖고 있는 관심은 흥미롭고 자극적인 구경거리를 연출하여 여론의 인기를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판의 헤게모니를 휘어잡는 일이나 온통 쏠려 있는 것 같다. 역사의식의 실현이나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방책은 지 만치 뒷전에 물러나 있다.

40

하지만 나는 김영삼 정부의 인권정책을 과거의 유신, 5공, 6공 때의 인권정책과 동일한 것으로 몰아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부 스스로 선언한 과거와의 '단절'을 우리가 손수 '연결'시켜 줄 까닭이 없기 때문이며, 그럼으로써 정부를 과거의 선에 되돌려 놓고 다시 싸움을 시작해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스스로 '문민'이기를 선언했다. 과거에 그토록 불온시되었던 '개혁'이라는 단어를 정부 스스로 정책의 기조로서 선전하고 있으며, 인권부분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의식도 '문민정부'의 자존심인 것처럼 확인되어 있다. 이러한 생산적 분위기를 뒤집어 놓을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결국 너도 똑같이 너의 정체를 밝혀라"는 질책 보다 "너는 확실히 다르다고 했으니 다르게 행동하라"는 요구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기대가 무너진 배신감을 토로하기에 앞서 냉철한 자세로 그나마 긴질 것은 일단 건져 놓고 보아야 한다. 정부 스스로 기왕에 내뱉은 말들을 하나하나 확인시키고 실현시키는 것, 이것이 지금의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문민'선언은 그 동안 정부의 압력이 있었진 아니면 알아서 기어간 간에 사회 여러 부분의 자정(自淨)과 변신을 유발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법부인 바, 사법부는 스스로 탈바꿈을 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이후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권을 보장하든가 보호실에 강제로 구금하지 말라는 등의 실정법확인 판결을 심심찮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법부의 분위기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근원에 있어서는 한참 미흡하더라도 '한번 해 볼' 분위기라도 마련되었다면 그 분위기에는 적극적으로 올라타는 것이 좋다. '인권'이 정치적 저항세력의 항변으로서가 아니라 마땅히 사람에게 주어져야 될 최소한의 도덕적 징표로 인식되는 분위기, 이것만 해도 이디인가? 이렇게 볼 때-지금은 인권운동에 있어서 분명 하나의 기회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의 시기에는 보다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들을 보다 많이 얻어내야 한다. 문제는 무엇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몇가지만 추려서 항을 바꾸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II. 향후 인권운동의 방향

2-1 그 동안의 인권운동에서 극복해야 할 점

미래는 과거를 딛고 극복해야 다가온다. 향후 우리 인권운동의 청사진도 그동안의 것에 대한 건설적 반성을 바탕으로 해야 그러질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과거 우리의 인권운동이 안고 있던 한계 -이제 극복되어야 할 과제-중 두가지만 이야기하려 한다.

첫째, 그 동안 우리의 인권운동은 대상이 '양심수', 즉 '심리적 피의압자'에 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인권운동은 시민운동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운동(발표자의 발표에 의하면 '민주화운동')의 하나로 이해되고 행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인권운동이 활약해야 할 본래의 영역이 포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발표자의 발표대로 인권운동은 '인간의 모든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이다. 보다 확실하게 수식을 붙이자면 '모든 인간의 모든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이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여기에서 인권운동이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발견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노동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지위와 권리도 노동운동 차원만이 아니라 인권운동의 차원에서 재조명되어야 하며, 범죄수사나 형벌집행 과정에서 양심수만이 아니라 일반 피의자와 수형자 모두의 인권에 관심이 두어져야 하고, 나아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자 등 소외집단의 이익도 인권운동의 차원에서 주장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종래 정치적 피의압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인권운동은 이러한 본래적 인권운동의 한 특수 전문분야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방법적인 면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즉, 종래의 인권운동은 '정치성'만을 강하게 띠다 보니 운동의 방법이 폭로와 선전의 수준에서 맴돌았던 측면이 있다. 아울러 항상 '단타(短打) 위주'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미 저질러진 인권유린의 뒷치닥거리(그것도 스트레스 해소 수준의)나 하는 꼴이 된다. 당장 이슈가 된 문제를 규명하는 일도 물론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인권운동의 근원적인 물줄기를 튼튼히

하는 일에 보다 많은 비중이 두어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의 인권운동은 발표자의 주장대로 '전문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근원을 바라보는 거시적 안목과 구체적 대안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향후의 인권운동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방법적 자세이다.

2-2 향후 인권운동에 가미되어야 할 요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인권운동! 여기에 하나 더 첨가할 말이 있다. 운동의 방법과 관련하여 이제 우리의 인권운동은 '법운동'의 모양새를 띠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인권운동은 결국 법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인권운동의 핵심은 '법운동'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운동가들 사이에 유행해 왔던 '법은 숙명적으로 지배집단의 이익에만 봉사하게 된다'는 인식은 오히려 불식되어야 한다. 법이 일정집단의 이익에 봉사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파행으로 평가되어야지 그것이 법의 본질로 파악되어서는 안된다. 법의 어디에도 그러한 숙명은 붙어 있지 않다. 법은 '정의로운 사회', '살만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기준(規準)일 뿐이고, 이 기준은 당연히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법에 대한 단죄'보다 '법을 이용한, 법을 통한 인권운동'의 노력이다.

아울러 인권운동이 법운동의 모양새를 띠 때, 우선적인 중점은 '입법운동'보다 '법준수운동'에 두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결코 '입법운동'을 소홀히 하자거나 과소평가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입법운동'과 '법준수운동'은 함께 가는 법운동의 두 바퀴이나, 우리의 현금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경향을 고려할 때 '법준수운동'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깊이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즉, 우리 인권상황의 문제점은 '악법'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존의 실정법을 국가공권력이 지키지 않음에서 비롯된 부분이 훨씬 더 많다. 예를 들어 고문문제만 하더라도 고문을 규제할 법이 미흡해서 고문이 저질러지는 것은 아니다. 법은 충분할 만큼 있으나, 그 법이 발동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법을 지키라는 운동,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하라는 운동, 여기에 많은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준수운동'은 끈질기게 행해져야 한다. '법준수운동'에 관한 한 정치적 타협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또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부문의 운동과 비교할 때 훨씬 더 강직하더라도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 '법준수운동'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법준수운동'을 법운동의 출발선이자 마지노선으로 이해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법준수운동'의 토양 위에 필요할 때는 입법운동도 집목되어야 최종적으로 법운동이 완성되는 것임은 물론일 테지만 말이다.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한국 그리고 나

오재식

사회교육원 원장

여러분 제가 쓴 글 '국제화와 인권'(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3호)을 읽은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얘기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계의 변화를 3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냉전체제 이후의 변화의 하나는 근본주의의 대두, 둘째 시장논리의 확장, 셋째 민족주의·종족주의의 새로운 차원 또는 대두입니다. 그 3가지를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본주의의 대두

근본주의 하면 우선 이슬람의 회교도를 생각하는데 이슬람 근본주의를 자주 신문에 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기독교 제국주의에 대한 반항입니다. 그것을 깊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근세 3백년 동안 서구라파 세력을 뒷받침한 정신적인 지주이고 자본주의를 도덕적으로 지원·축복해 왔습니다. 때문에 소위 근대화 과정에서 저지른 모든 죄의 근원이 기독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상체계 또는 종교적인 구조는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따라서 기독교라는 진리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원용·남용하는 서구라파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종교적인 근원에서 찾았습니다. 중동 이슬람의 강경파, 이슬람교의 우위파 사람들의 입장은 '기독교의 메시아주의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내걸은 이른바 인류사회를 빈곤에서 구제할 것이라는, 2차대 전 이후의 세계관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를 어디에다 세울 것이냐는 것을 고민하면서 젊은 과격한 사람들은 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테러집단이라고 규정하기 전에 그 배후에 훨씬 더 깊은 서양문명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서양문명이 세계를 대변할 수 있느냐'는 회의 등이 깊게 깔려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해서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본주의가 왜 나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 근본주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번의 선거결과 분석에 의하면 미국을 지난번 선거에서 공화당으로 뒤집은 것이 기독교 우익집단들의 선동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만약 차기 미국대통령을 공화당이 내면 미국의 대외정책은 굉장히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의 이익집단이 그 배후에 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이슬람과 미국의 대결국면으로 갈 것입니다.

민족주의·종족주의 문제

둘째로 이 민족·종족주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민족주의를 넘어서 세계주의로 가자, 국제화 해야 되지 않느냐'는 한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세계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방, 지역, 나라 등에 기초하는 것이니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민족이라는 주장입니다. 민족주의가 냉전 이후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구라파를 동구라파 중구라파 서구라파로 나누는데 중구라파는 유고슬라비아에서부터 쪽 올라가는 대륙이고 동구라파는 산맥 이쪽에 사는 동쪽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구라파 동구라파는 사회주의권이 해체가 되어 해방되고 난 뒤에 '나라건설을 하는데 무엇을 할 것이냐'고 하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던 세계주의, 즉 세계 만민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세계주의에서 이탈하고 나니까 나라를 세우는데 무엇을 가지고 세우느냐는 것이 문제로 남습니다. 결국 민족의 정체성 즉 우리 민족은 분디 이랬다는 과거형, 복고형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민족주의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개방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그 집념 때문에 복고주의적인 양태를 갖기 시작합니다. 세계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반동적인 데로도 말려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동구라파, 중구라파만이 아니고 여타의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파급이 되었습니다.

가령 아프리카를 보게 되면 상당히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아프리카대륙은 종족·부족(자연부족)이 1만여 이상된다는데 그 부족들은 서구라파 세력들에 의해 침탈 당했습니다. 침략하고 식민경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식민국가간에 충돌하니까 금을 그어서, 여기까지가 네 땅이고 여기부터는 내 땅이라는 식으로 국민국가형태로 나가게 되어 지금의 대륙모양이 그려졌습니다. 아프리카를 공부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19세기말엽 25년 동안에 아프리카 1만여의 부족사회를 24개 국민국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국경이 위도, 경도를 따라서 직선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연부락이 아니지요. 열강들이 인위적으로 분할해서 통치한 역사가 아프리카입니다.

지금 와서 그 경계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부족주의가 민족주의로 연결되고, 국경이 그어진 위도·경도를 다시 자연 부락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르완다 사태는 그 하나입니다. 부족간의 경쟁이나 싸움 등이 서구라파의 제국주의가 통치할 때는 군사적인 위협 때문에 꿈쩍 못하고 있었는데, 통치가 없어지고 나니까 '무엇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느냐, 우리는 본디 이랬다'는 과거 지향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수민족들의 문제, 예를 들어 터키와 주변에 있는 커드족의 문제에도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지만 같은 동족입니다. 말도 같고, 풍속도 같고, 조상도 같고 때문에 커드족은 국적이 달라도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상당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독립국가를 세울 땅이 없습니다. 다 남의 땅이지요. 자꾸 그런 문제가 생겨서 커드족과 이라크간에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를 잘 나타내는 논문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역사학자 베레딕트 앤더슨의 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소장학자인데 그가 쓴 많은 책 가운데 『상상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그는 인도네시아로 가서 공부를 했고,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책을 썼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화란의 식민통치를 받은지 몇 백년이 되었는데 그 나라는 수많은 부족과 수천 개의 섬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적어도 화란은 아니다 라는 상상(Imagination)이 있었습니다. 반사적인 Imagination을 스키타노가 기가 막히게 응용했습니다. 그 많은 섬들을 하나의 국가로 만든 것, 이것이 Imagination입니다.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우리가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각각의 생각을 하나의 독립국가로 형성하는 정치적인 카리스마 그것 역시 독립운동을 했던 자람들, 화란과 대항해 싸웠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카리스마적 힘때문에 뭉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논리해 대항하는 원거리 민족주의(distant nationalism)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거리 민족주의(distant nationalism), 예를 들던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LA 한국사회 안에서 민족주의(nationalism)가 강하게 일어난 것은 거리가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아리랑을 부르고, 명절을 지키고, 추석때 송편을 빚고 하는 정신은 바로 거리를 초월해서 nationalism이 서로 연대가 되는 것의 반증입니다.

이런 통찰은 앞으로 새로운 세계질서가 무엇이나? 어떤 질서 위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하느냐 하고 할 때 상당히 중요한 포석이 됩니다. 그래

서 imagined community, distant nationalism 등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시장경제 논리를 대항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사람이 인도의 꼬따리(Khotari)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국민국가라고 하는 큰 실체가 몇 백년 동안 서구라파를 통해 계속 살아 국가의 개념과 시장의 개념이 세계 모든 인구를 표준화시켜 왔습니다. 한 국가 국민의 의무는 이런 것이라라고 헌법으로 정하고 그 틀 안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 우격다짐으로 교육을 통해 집어넣어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후천적인, 훈련을 통해 만들려니까 표준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이전에 국민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장은 주고받고 거래하는 곳입니다. 마진을 얼마를 붙여야 하느냐,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상품이 어떠한 해야 한다는 시장의 표준형이 생깁니다. 올림픽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속도 조정도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100미터를 뛸 때 얼마에 뛰어야 하는가가 표준가치가 됩니다. 기차는 얼마큼 달려야 하는가, 따라서 인간의 생산 능력은 어떠한 해야 하는가는 문제로까지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표준형입니다. 그 표준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예외 규정은 전부 잘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강력한 근대화 과정에 시장·정부·국가가 가지고 있는 표준형을 뚫을 수 있는 길은 '종족주의'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원거리 민족주의, "우리가 본래 하나였다"는 종족주의, 이것이 개방적이기만 하면 그 표준화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꼬따리 교수가 통찰했습니다. 거기에는 '개방적이기만 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경제, 세계화를 외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그 표준화 과정에서 인간이 얼마나 잘리고, 부대끼니까. 내가 다리가 짧으면 길게 만들고 길면 짧게 만들면서 표준형이 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 개념이 개념화되어 우리의 사고방식이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식으로 되어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낙오자가 되거나 전부다 범법자가 되거나 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까지, 냉전체제가 끝날 때까지 그래왔는데 그 가상적인 구조물이 붕괴가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백화만방'이 되는 겁니다.

2차 대전 후에도 그랬지만 세계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를 중심으로한 서구라파 세력의 자기투사인데) 조그마한 로마제국에서부터 이야기하면 점점 지역적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군사적인 지배권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 논리도 점점 확장되어 가고 그 선상에 세계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주의(팍스아메리카까지 포함해서)가 냉전체제 붕괴와 더불어 끝이 왔습니다. 이른바 기독교적인 메시아주의가 끝이 왔다는 겁니다.

국제주의에 도전하는 국익론

이 글은 문화일보의 12월 21일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국제주의에 도전한 국익론'이라고 워싱턴 특파원이 쓴 것입니다. 공화당 후보들의 하나같은 이야기가 미국의 대외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로주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인데, 우리 살기도 바쁘는데 왜 세계를 모두 껴안으려고 애쓰느냐는 것입니다. 즉 국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냉전 체제 때는 한반도가 공산화 안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라고 강변했지만 지금은 소련의 도전이 없는데 한반도를 지켜야 하나, 국익과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경제손해라는 국익론이 나옵니다. 세계주의를 내세워 봐야 안 되겠고 다시 먼로주의로 돌아가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논문에도 썼습니다만 OECD 국가간에도 이미 무한 경쟁시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타의 나라들 즉 "후진국가들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돌보느냐"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지금 우리가 "왜 그것까지 신경 쓰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세계주의, 국제주의의 허구성을 잘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되풀이해서 표준형을 문화사적으로 보면 표준형이라는 말은 가장 기본이 싸우는 사람, 무사를 말합니다. 한 집안에서 수렴을 잘해 양식을 확보하는 사람에서부터, 힘이 있어 가상의 적과 싸워 가족을 보호하고, 타부족에게 이겨 부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고 하는 '무사' 중심입니다. 따라서 전투능력이 없는 사람은 제외되었습니다. 자연히 전사, 무사의 문화가 세계 줄기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가령 서구라파의 민주화 과정을 보아도 맨 처음 투표권은 무사들에게 있다 가차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투표권을 사 겨우 받을 불이게 됩니다. 귀족사회가 생기고 시민이 생기고, 점점 투표권이 확장되어 갑니다. 바로 그 중심표준 사상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여성 투표권이 생긴 것은 최근의 일이고,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스위스의 어느 지방에서는 여성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투표권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들이 서구라파에 있었습니다. 사고의 중심에는 표준형을 중심으로 여타의 것을 처리하면 된다고 여겨 온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자의 문제, 소수 민족의 문제, 원주민의 문제 등이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원주민 문제도 지금 뉴질랜드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백인들이 뉴질랜드, 호주를 점령한 것은 2백20년 안팎의 일입니다. 뉴질랜드는 쿠키 선장을 위시한 구라파 항해사들이 신대륙 발견이라고 깃발을 꽂고 개척한 나라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본토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을 모두 총칼로 제압하고 백인들의 표준을 세웠습니다. 비록 숫자는 원주민이 많지만 백인들의 표준에 맞지 않으니 백인들이 보기에는 본토 사람이 변방 사람들인 것입니다. 본토사람들을 특정 지역에 가두어 놓고 나머지는 모두

다 점령을 하는 그런 역사였는데 2백년이 지나 새로운 세계사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것이 창피하다는 겁니다. 창피할 뿐만 아니라 본래 본토민들의 주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2백년 역사를 가졌지만 우리는 몇 만년을 살아왔다, 총칼로 만들어 놓은 와이팅조약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와이팅기에서 마우리족 추장을 데려와 서명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조약은 우리나라의 한일합방과 마찬가지로 총칼에 의해 한 것입니다. 강요된 조약이니까 무효다라고 마우리족들이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전통의 역사, 확장의 역사의 중심에서 보면 그들은 다 찌꺼기 인간들인데 이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표준화에 맞서 나타난 상이권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성능·기능·역할이 같지 않은, 등급이 떨어진 장애자가 있습니다. 장애자의 인권의 문제를 얘기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UN이 장애자의 인권선언을 한 것이 20년 전입니다. 75년 12월9일 장애자 인권선언을 했으니까 금년이 꼭 20년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들어 겨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등이 생겨 장애인보호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중심이 잘살면 장애자도 여타의 종족이니까 보호해 준다는 생각이 장애자가 본래 권리가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중심에서 시작하는 이 사고를 변방운동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본래 패러다임이 잘못되었다. 어떻게 메시아주의가 가능할 수 있는냐'는 이것은 인권운동의 기본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슬람-근본주의자들의 서구라파 운명에 대한 도전과 도식이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확장되어 모든 피조물들, 인간이건 동물이건 기본 생물의 존귀와 존엄은 같다는 생각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기독교에 성서가 쓰여진 당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중심부가 조금씩 와해되고 양보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지, 변방의 힘으로 중심부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 중심부는 엄연히 살아 있고, 우리 생각이 점차 바뀌어 갈 뿐이지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가 장애인운동하는 사람인 어느 의사를 만났는데, 그는 "뇌성마비 환자들의 문제는 하나도 우리와 틀릴 것이 없다. 컴퓨터로 얘기한다면 코드와 코드 사이의 접속 속도가 느린 것뿐이다. IQ가 낮다고 하는 것은 접속 속도가 느린 것뿐이다"는 말을 했습니다. 만 사람처럼 빠르지 않고 조금 더디게 가는 것입니다. 속도의 문제이지, 기본 기능의 차이는 아닙니다.

속도는 표준을 가지고 볼 때 100미터를 몇 초에 뛰어야 하는 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IQ가 150은 되어야 정상이 아니냐는, 즉 속도의 표준화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등차

가 생기는 것입니다. 등차를 매겨서 너는 우월하다, 너는 열등하다는 사고방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역사와 같이 갑니다만 가령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인간이라고 선언할 때 그것은 인간으로 살 때는 인간으로서 살 권리가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살 권리, 즉 생존권뿐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내 생활 수단을 벌 수 있는 개발권도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개발권이 있으면 국가는 그 개발권을 존중할 의무를 갖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social minimum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거창한 이야기입니다.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재력으로는 도저히 개발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세계적인 연대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사상 가운데 하나는 상이권입니다. '내가 너와 다를 수 있는 권리',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1980년대 불란서의 학자기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너랑 같아야 되느냐는 독자권 내지는 상이권은 이런 것입니다. 소수민족, 가령 일본에 있는 재일 교포들(조선족)은 역사적인 원인 때문에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왜 일본인과 같아야 하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일본성을 가져야 하고, 일본말을 쓰고, 일본 기모노를 입어야 하고 일본음식을 먹어야 하느냐는 반문입니다. 김치를 먹고 싶다는 그 독자권 내지, 일본 사람과 다를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소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이권의 사상은 표준화에 대한 도전입니다. 한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있어야 하고 국민교육, 국민경제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국가 체제가 얼마만큼 각자의 상이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관용의 문제는 앞으로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난민, 이주노동자의 문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난민문제입니다.

세계 난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공식 통계가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비공식으로 하면 배는 될 것입니다. 난민을 적게 잡아 5천만 명이라고 칩시다. 난민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또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사람, 자기 의사와 달리 상황 때문에 쫓겨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쟁, 자연재해, 정치적인 탄압의 난민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의사와는 달리 떠나 있습니다. 이 숫자가 1천만 명이 넘어가면 국내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법체계가 1천만 명에게 거주권을 줍니까. 말도 안되지요.

또 하나는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파악된 숫자가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파악 안된 수가 많을 테니까 아무리 낮게 잡아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식 등록된 사람은 8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배는 넘어간다고 하지요. 불법체류등으로 라벨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 인구가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산업적 이유, 경제적 이유, 정치적 이유 또는 자연재해의 이유 때문에 1억이 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제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표준화, 법제의 표준화, 경제의 자생 능력까지도 도전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령 북한이 잘못되어서 2천만명 가운데 5백만 명의 난민이 생겨(중국이 강을 완전히 봉쇄해) 남쪽으로 넘어온다면 5백만 명의 난민을 남한 경제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8%, 9% 씩 경제 성장을 합시다만 1-2% 또는 마이너스성장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때 오는 일반적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고 싶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표준을 내려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난민을 보호하자, 인권을 보호하자, 저 사람도 인간이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난민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새로운 냉전체제의 현상입니다.

냉전체제 때는 양진영이 경쟁을 했습니다. 난민을 어떻게든 블록 안에서 해소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비판하니까 감싸안으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련한 UN 난민 위원회로 전부 몰려갑니다. 이것은 국내법, 국내 문제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구제 대상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면 각각의 민족의 근거지가 됩니다. 우리 민족이 중국 북부에 갔을 때도 난민이었습니다. 한때는 3백만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거기에 김치가 생기고, 치마저고리, 추석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nationalism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distant nationalism이 난민 5천만 명을 통해서 사방에 흩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세계가 예측하지 못했던 요인들 때문에 세계사가 바뀔 조짐들이 생겨 가고 있습니다. 그 씨가 사방에 뿌려져 가고 있습니다.

사라예보는 보스니아의 수도인데 세계 제1차 대전이 시작된 곳이 바로 보스니아입니다. 사라예보는 1984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인구가 34만 명밖에 안됩니다. 그 가운데 11만 명이 난민이니까, 1/3이죠. 이번 전쟁으로 확인된 숫자만으로도 2만 명이 죽었고 6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깊이를 알 수 있겠지요.

서구라파 세력이 왜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해결하지 못하고 왜 3년동안 방치했느냐는

것은 탈냉전 후 질서구조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났느냐는 이야기를 하지만 유고슬로비아 문제는 궁극적으로 탈냉전후 제각각 국가이익주의, 자국주의로 돌아갔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나 나라 병사를 죽이고 싶지 않다는 국가 이익주의가 서로 앞서 있었습니다. 자기네 나라 병사를 파병한 나라들도 남의 나라 사령관 밑에 두질 않았고 다 각각의 사령관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독립군대로서 연합군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나토가 개입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고, 그것도 지상군보다는 공군력으로 폭격한 것에 그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옛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사회주의권만 망한 것이 아니고 자유주의권도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보스니아 전쟁을 해결하지 못한 데에서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자국주의, 자국이익을 우선 지키는 한도에서 개입을 하려 했습니다. 자유권 인권이고 나발이고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위해 싸우는 사라예보의 슈바이처

이것은 조선일보 12월 21일자 기사입니다. 48세인 사라예보 의과대학 교수는 유대인인데 회교도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면 회교도나 아니면 다른 종교나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최교도라는 것은 후천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내 부인의 종족인 회교도를 도와야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으로 의약품 지원을 했습니다. 보스니아에 지원권 의약품의 절반 이상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갔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50%입니다. 이는 기가 막힌 활동입니다. 사라예보의 슈바이처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교수는 애를 썼는데, 그는 세계 유대인들이 지원하는 유대인 단체 베네딕토헌회를 만들고 서적 각국의 유대인들한테 돈을 거두어 그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2차대전 때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는데 자기네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자는 인도주의가 앞서갔던 것입니다. 희생자의 역사적인 역할이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사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인이 회교도인 가운 박사는 '유대인이 회교도를 돕고 회교도가 세르비아인들을 돕는데, 세르비아인들은 회교도를 계속 폭격하고 죽였다. 회교도가 세르비아인들을 돕는 것은 사라예보밖에 없다. 내전 이후에도 사라예보에는 그같은 전통을 유지해 갈 것이다'고 말했다.

지금 평화 협상이 되어서 겨우 이제 총소는 것은 멈추었지만 휴전 상태이면 문제는 회교도와 세르비아인이 같이 살 수 있느냐, 크로아치아인이 같이 살 수 있느냐, 또 기독교 계통의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느냐 하는 갈등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신화로 남을 것입니다는 이런 영감이 없이는 한 community가 지탱이 안됩니다. 이것이 결혼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야기 '얼굴없는 인권침해자'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합시다.

김수환 추기경이 최근 관훈클럽에 가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역사 청산이라고 해서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민족사적인 과제다. 그것을 잘 처리하면 우리는 명예혁명의 후예가 되고 일등 국민이 된다. 이것이 엉망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구렁텅이 속에 빠진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정당끼리 싸우고 서로 시샘을 하고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하느냐."

그런데 오늘 아침 외신에 금년도 10대뉴스 중 3번째가 우리나라 전두환, 노태우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세계 10대 뉴스의 3번째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률적인 국민이나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해방 후에 못했고 박정희 죽은 다음에 못했고, 4.19때 못했고 계속 밀려와서 이제 겨우 기회를 잡았는데, 이것이 또 명년의 선거 정치와 연결이 되어서 중간에 유야무야되고 "아, 좋다 내줄 테니까 지시한 대로해라" 이런 식으로 흥정이 생기고 이러면 또 안되는 겁니다.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근대화 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람들, 산업화·근대화라는 이름으로 희생시킨 사람들, 고문해서 죽은 사람, 자살해서 죽은 사람, 견디다 못해서 투신한 사람들, 삼풍 백화점에서 희생당한 사람들, 성수대교에서 무너진 사람들, 대구 가스폭발사고로 무너진 사람들... 70년대는 가해자가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몇 사람의 가해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누가 누구누구를 가해한 겁니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의 전성기인 지금은 가해자의 얼굴이 없습니다. 성수대교? 건설업자가 있지만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풍?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형도 못시킵니다. 가해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가스가 터졌는데도 최선을 다했는데 폭발한 걸 어떻게 합니까고 대답합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무엇이 떨어지면 아, 그거 바람이 세서 날아왔습니다. 가